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01

일 본



## 1. 수산물수입 관련제도

### ■ 관세제도

- 관세 3법
  - 관세법
    - 관세의 확정과 납부, 적정한 수출입품의 통관을 규정
  - 관세정률법
    - 수입금지 품목을 정하고, 세율과 감면세 등 관세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
  - 관세잠정조치법
    - 다른 두 법의 잠정적 특례를 정해두고 경제사정 등에 대응해 긴밀하게 개정
- 관세부과 방법
  - 종가세
    - 수입화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함
    - 기준이 되는 가격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임
    - 주로 종가세를 채택함
  - 종량세
    - 개수와 증량을 기준으로 부과함
    - 주류 등은 종량세를 채택함
- 관세율
  - 관세율은 획일적이지 않고 크게 기본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로 구분됨. 세율의 적용순위는 법률로서 정하고 있음
    - 기본세율: 관세정률법에 정해진 세율로서 관세행정상 기본이 되는 세율
    - 잠정세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관세잠정조치법에서 정한 세율
    - 협정세율(GATT 양허세율): 외국과의 조약을 기본으로 특정의 품목에 적용되는 세율

- 특혜세율(일반특혜세율과 최빈 38개국에 대한 특별특혜세율): 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한 특정 품목이 일정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적용

- 특혜관세 관계
  - 특혜수익국 등(특별특혜수익국을 포함)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음
  -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수출할 때 해당국가에서 발급하는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취득해야함 (\*총 가액이 20만 엔 이하의 경우는 불필요)

#### ■ 수입할당(IQ; Import quota)제도

- 수입할당(IQ)제도의 목적
  - 자국의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입상품에 대해서 수입수량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국가별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 자국의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임
- 일본은 「외국의환법 및 외국무역법」을 근거로 특정화물에 대해 수입 가능한 수량 및 금액을 할당하는 수입할당(IQ)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한국산 9개 어패류에 대한 수입할당
  - 1966년부터 한국산 수산물 9개 어패류(대구, 방어,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건멸치, 꽂치, 가리비, 패주)에 대해 연간 수입금액을 제한하고 있음
  - 한국산 9개 어패류 연간 수입금액쿼타
    - 1982년 4500만 달러, 1983년 4000만 달러, 2004년 이후 4,500만 달러로 한국산 수산물 9개 어패류의 수입금액이 연 4,500만 달러를 넘지 못함
- 한국이외 102개국 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할당(쿼타)
  - 방어, 꽂치, 패주, 건멸치 품목 : 금액할당제 실시
  - 그 외 품목 : 2001년 수량할당제로 전환(수입어종의 단가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일본 내 수입자는 수입쿼터를 소유해야 관련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음.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수입상사(단체) 등에게 할당을 하고 있음
-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승인/할당)신청서’(필요서류)를 수입 전에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함

● 수입할당의 공포

- 수입관리제도는 수입무역관리령에 의해 경제산업성에서 고시함
- 관보, 경제산업공보, 통칭홍보에 게재되며 수입할당을 받아야하는 화물의 품목, 수입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화물의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의 기타 화물수입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공포하고 있음

● 수입할당(IQ)품목

-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제(IQ)품목
  -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제(IQ)품목은 20개 품목이 있으며(2011.10.26일 현재), 한국은 다음의 13번까지(①~⑬) 적용됨

① 수산물에 대한 수입할당제 (2011년 7월 27일 발표)

해당품목	대구,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꽁치, 건멸치, 가리비, 패주 등 (청어, 명태, 명란, 오징어, 건오징어는 제외) (활·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지육을 포함)
HS번호	0301-99-2, 0302, 0303, 0304, 0307
수입할당량	4,500만 달러 (한국만 적용)

② 마른 김에 대한 수입할당제 (2011년 2월 8일 발표)

해당품목	건조 김										
HS번호	1212-20-1-(1), 1212-20-1-(2)										
수입할당량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전체</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right;">6억79백 만장</td> </tr> <tr> <td>상사할당(한국)</td> <td style="text-align: right;">1억60백 만장</td> </tr> <tr> <td>상사할당(중국)</td> <td style="text-align: right;">2억88백 만장</td> </tr> <tr> <td>수요자할당</td> <td style="text-align: right;">2억26백 만장</td> </tr> <tr> <td>선착순할당</td> <td style="text-align: right;">5백 만장</td> </tr> </table>	전체	6억79백 만장	상사할당(한국)	1억60백 만장	상사할당(중국)	2억88백 만장	수요자할당	2억26백 만장	선착순할당	5백 만장
전체	6억79백 만장										
상사할당(한국)	1억60백 만장										
상사할당(중국)	2억88백 만장										
수요자할당	2억26백 만장										
선착순할당	5백 만장										

③ 무당 조미김에 대한 수입할당제 (2011년 2월 8일 발표)

해당품목	무당 조미 김								
HS번호	2106-90-2-(2)-E-(b)								
수입할당량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전체</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right;">5억 3백 만장</td> </tr> <tr> <td>상사할당(한국)</td> <td style="text-align: right;">3억 2백 만장</td> </tr> <tr> <td>수요자할당</td> <td style="text-align: right;">1억94백 만장</td> </tr> <tr> <td>선착순할당</td> <td style="text-align: right;">7백 만장</td> </tr> </table>	전체	5억 3백 만장	상사할당(한국)	3억 2백 만장	수요자할당	1억94백 만장	선착순할당	7백 만장
전체	5억 3백 만장								
상사할당(한국)	3억 2백 만장								
수요자할당	1억94백 만장								
선착순할당	7백 만장								

④ 김 조제품(무당 조미김 제외)대한 수입할당제 (2011년 2월 8일 발표)

해당품목	김 조제품(구운 김 포함, 무당 조미김 제외)	
HS번호	2106-90-2-(2)-E	
수입할당량	전체	1억81백 만장
	상사할당(한국)	29백 만장
	상사할당(한국 이외)	84백 만장
	수요자할당	65백 만장
	선착순할당	3백 만장

⑤ -a. 다시마 조제품에 대한 수입할당제 (2011년 6월 20일 발표)

\*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물량부족으로 2010.11월4일 수입할당과는 별도로 추가 할당됨

해당품목	다시마(데친 후 염장한 것), 다시마조제품	
HS번호	1212-20-1-(3), 2106-90-2-(2)-E	
수입할당량	전체	1,100톤
	수요자할당	935톤
	선착순할당	165톤
	(한국만 적용)	

⑤ -b. 다시마 조제품에 대한 수입할당제 (2010년 11월 4일 발표)

해당품목	다시마(데친 후 염장한 것), 다시마조제품	
HS번호	1212-20-1-(3), 2106-90-2-(2)-E	
수입할당량	전체	600톤
	수요자할당	480톤
	선착순할당	120톤
	(한국만 적용)	

⑥ 명태에 대한 수입할당제 (2011년 4월 22일 발표)

해당품목	명태(활·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담금·건조, 명란은 제외)	
HS번호	0301-99-2, 0302, 0303, 0304, 0305	
수입할당량	1,027천 톤 (대 전세계)	

⑦ 청어(태평양종)에 대한 수입할당제 (2011년 3월 11일 발표)

해당품목	청어(활·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담금)
HS번호	0301-99-2,0302, 0303,0304,0305
수입할당량	92,000톤 (대 전세계)

⑧ 청어(태평양종 제외)에 대한 수입할당제 (2011년 9월 2일 발표)

해당품목	청어(활·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담금)
HS번호	0301-99-2,0302, 0303,0304,0305
수입할당량	65,000톤 (대 전세계)

⑨ 명란에 대한 수입할당제 (2010년 11월 4일 발표)

해당품목	대구(명태 포함)알
HS번호	0302, 0303, 0305
수입할당량	98,326톤 (대 전세계)

⑩ 오징어에 대한 수입할당제 (2011년 3월 11일 발표)

해당품목	오징어(활·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담금)
HS번호	0307
수입할당량	74,950톤 (대 전세계)

⑪ 건조오징어에 대한 수입할당제 (2011년 11월 4일 발표)

해당품목	건조오징어
HS번호	0307
수입할당량	4,500톤 (한국 포함)

⑫ 다시마에 대한 수입할당제 (2011년 7월 29일 발표)

해당품목	다시마	
HS번호	1212-20-1-(3)	
수입할당량	전체	2,960톤
	수요자할당	2,810톤
	선착순할당	150톤
	(대 전세계)	



⑬ 콩치에 대한 수입할당제 (2011년 5월 9일 발표)

\* 동일본대지진으로 냉동보존재고가 손실되어 추가로 수입할당

해당품목	콩치(냉동·염장·염수담금·건조)
HS번호	0303 0304 0305
수입할당량	11,800톤 (한국 포함)

⑭ 가리비에 대한 수입할당제 (2011년 5월 9일 발표)

해당품목	가리비(활·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담금·건조)
HS번호	0307
수입할당량	5,720톤 (한국 제외)

⑮ 방어·콩치·조개관자 및 멸치 수입할당제 (2011년 5월 9일 발표)

해당품목	방어, 콩치, 조개관자, 멸치 (활·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담금·건조)
HS번호	0301-99-2,0302, 0303,0304,0305, 0307
수입할당량	2,640만 달러 (한국 제외)

⑯ 대구 수입할당제 (2011년 4월 22일 발표)

해당품목	대구 (활·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담금·건조)
HS번호	0301-99-2,0302, 0303, 0304, 0305
수입할당량	72,700톤 (한국 제외)

⑰ 고등어 수입할당제 (2011년 9월 30일 발표)

해당품목	고등어 (활·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담금·건조)
HS번호	0301-99-2,0302, 0303, 0304, 0305
수입할당량	227,000톤 (한국 제외)

⑱ 전갱이 수입할당제 (2011년 9월 2일 발표)

해당품목	전갱이 (활·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담금·건조)
HS번호	0301-99-2,0302, 0303, 0304, 0305
수입할당량	125,000톤 (한국 제외)

⑱ 정어리 수입할당제 (2011년 9월 2일 발표)

해당품목	정어리 (활·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담금·건조)
HS번호	0301-99-2,0302, 0303,0304,0305
수입할당량	50,800톤 (한국 제외)

⑳ 날개의 건조 파래(青海苔, green laver) 및 일동초(一重草)수입할당제 (2011년 7월 29일 발표)

해당품목	날개의 건조 파래 (青海苔, green laver) 및 일동초(一重草)
HS번호	1212-20-1-(3)
수입할당량	130톤 (한국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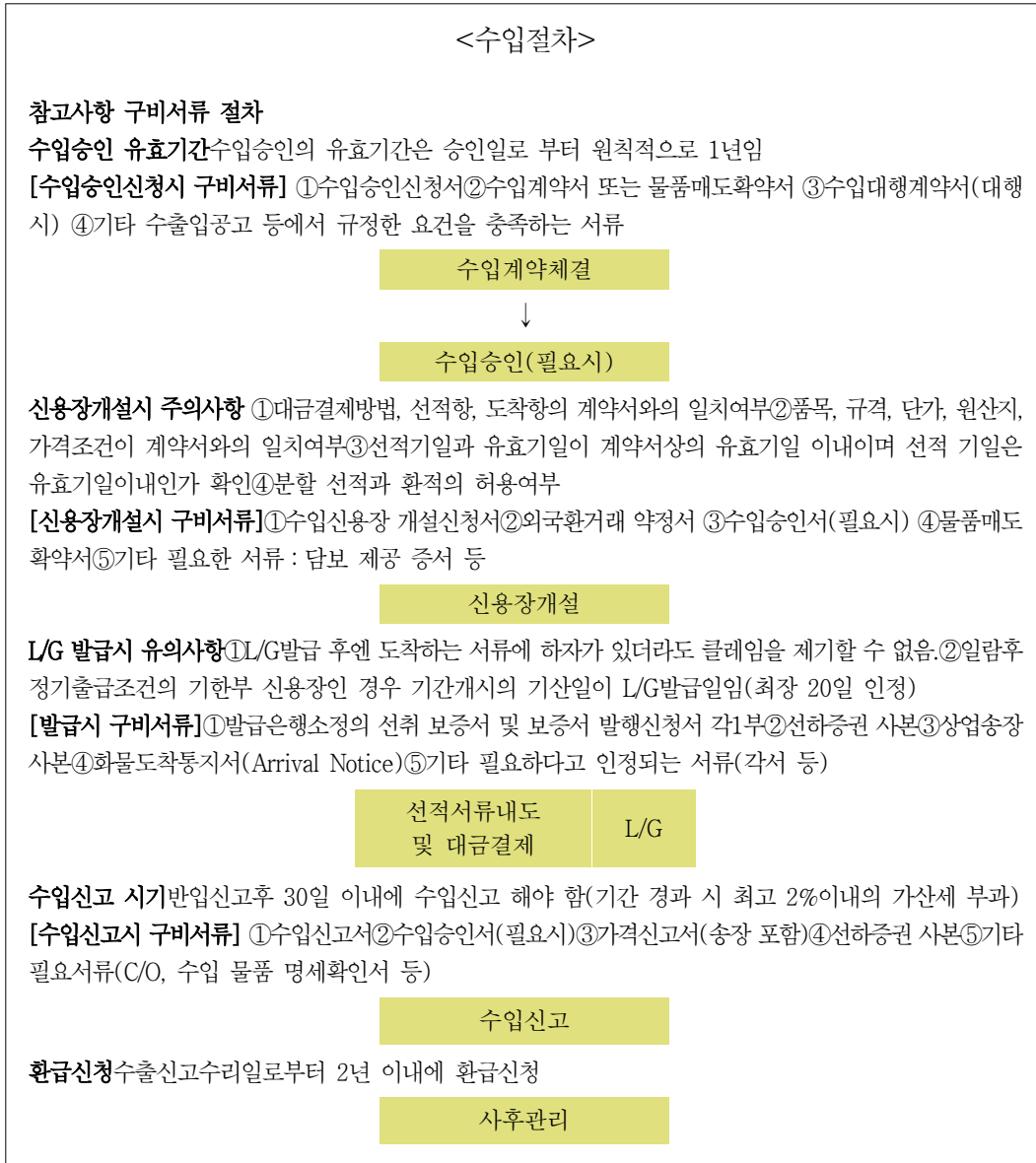
● 수입할당대상이 되는 실행 관세율 표 HS코드 및 품목

HS 코드 (관세율표번호)	품 목
0301.99-2	살아있는 청어, 대구,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꽂치
0303.02	신선 또는 냉장 청어, 대구, 대구알,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꽂치
0303.03	냉동청어, 대구 및 대구알,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꽂치
0303.04	청어, 대구,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 피레트, 기타 어육
0303.05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청어, 대구, 방어, 고등어, 전갱이 및 고등어 관련어종의 피쉬밀, 대구알 및 찌서 말린 것
0303.07	가리비, 패주 및 오징어
1212.20-1-(1)	장방형(정방형 포함)의 지장(紙狀)으로 조제한 식용의 해초로, 한 장의 면적이 430평방cm 이하의 것
1212.20-1-(2)	홍조류과의 식용해초 및 이것을 섞은 식용해초 (관세율표제1212.20호의1-(1)을 제외)
1212.20-1-(3)	기타 식용의 해초
2106.90-2-(2)	해초의 조제 식료품

※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사이트 참조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import/wariate/suisanbutsuhappyo.htm](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import/wariate/suisanbutsuhappyo.htm)

■ 수산물 수입절차



- 수입계약체결
- 일본 수입업체의 수입승인(필요시)
  - 수입승인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인일로부터 1년임
  - 수입승인신청 시 구비서류

- 수입승인신청서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대행계약서(대행 시)
- 기타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 신용장개설

- 신용장개설시 주의사항

- 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항의 계약서와의 일치여부
- 품목, 규격, 단가, 원산지, 가격조건이 계약서와의 일치여부
-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이 계약서상의 유효기일 이내이며 선적 기일은 유효기일이내인지 확인
- 분할선적(약정된 상품을 두 번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과 환적(해상운송에서 운송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의 허용여부

- 신용장개설시 구비서류

-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 외국환거래 약정서
- 수입승인서(필요시)
- 물품매도 확약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담보 제공 증서 등)

● 선적서류도착 및 대금결제 또는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제출

- L/G발급 시 유의사항

- L/G발급 후엔 도착하는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음
- 일람 후 정기출급조건의 기한부 신용장인 경우 기간개시의 기산일이 L/G발급일임 (최장 20일 인정)

- L/G발급 시 구비서류

- 발급은행소정의 선취 보증서 및 보증서 발행신청서 각1부
- 선하증권 사본
- 상업송장 사본
-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각서 등)

- 수입신고

- 수입신고는 반입 신고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함
- 기간 경과 시 최고 2% 이내의 가산세 부과
-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
  - 수입승인서(필요시)
  - 가격신고서(송장포함)
  - 선하증권 사본
  - 기타 필요서류: C/O(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수입물품명세확인서 등

- 통관제도

- 인도절차 (외국화물 → 일본국 내) 및 수입허가
  - 화물이 보관된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납세)신고를 해야 함
  - 세관검사가 필요할 경우 필요한 검사를 거친 후 관세, 소비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납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입허가를 받으면 일본국 내 화물이 되어 언제라도 인도가 가능하나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해 수입 시 허가, 승인을 필요로 하는 화물은 세관의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는 허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수산물 중에는 수입무역관리령에 의해 수입할당제도, 수입승인제도, 확인제에 의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또한,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입신청이 필요함
- 수입통관
  - 수입통관에 관해서는 「수입신고서」에 송장(Invoice), B/L, 보험명세서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며 세관에서 심사·검사 및 납세 후 수입허가서가 교부됨
- 수산물 통관을 받는 HS코드는 아래와 같음

- 02류/03류/05류/12류/15류/16류/21류/23류/35류/71류

- 외국환율 및 외국무역법, 수입무역관리법령 관계품목
  - 동 법령에 의거한 대상품목을 수입할 때에는 경제산업성을 대신하여 승인 등을 얻기 위해 다음의 각 제도에 나타난 절차를 따라야 함. 대상품목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보, 경제산업공보, 통상공보 등에 게재됨

[2호 승인제도]

- (a) 특정의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으로부터의 특정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승인·할당) 신청서', '수입승인신청이유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수입 전에 경제산업성 담당과에 제출함
- (b) 대상품목 : 국제포경(捕鯨)단속조약의 비가맹국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으로 하는 고래 및 그 조제품, 볼리비아 및 그루지야를 원산지로 하는 눈다랑어, 중국·대만 및 북한을 원산지·선적지역으로 하는 연어 및 송어, 또한 이러한 조제품, 일본의 구역에 속하지 않는 해면을 선적지역으로 하는 어패류 등

[사전 확인제]

- (a) 정해진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전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신청서를 경제 산업성 등에 제출함
- (b) 대상품목 : 선박에 의해 수입되는 다랑어(날개다랑어, 참다랑어 및 남방다랑어를 제외한 신선, 냉장, 냉동의 것)와 청새치(황새치 제외하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의 것), 냉동한 참다랑어, 남방다랑어, 눈다랑어, 황새치, 고래 및 그 조제품 등

■ 수입관련 법규

- 수산물 수입관련 법규에는 관세법, 관세정율법, 관세잠정조치법, 식품위생법, 수산자원보호법, 외래생물법, 검역법등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관세법
  - 농수산물의 관세와 수입금지 품목은 재무성 「관세법」에 나와있음
  - 세관에서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수입의 가부관정을 하고 있으며 이때 「식품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세법 이외의 농수산물의 수입관련 법규에 의거 농수산물의 허가·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함
  - 관세는 수입(납세) 신고 후에 서류심사 및 필요한 검사를 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에 수입허가를 함

- 관세정률법

- 관세정률법은 관세의 세율, 과세표준 및 관세의 감면, 기타 관세제도에 대한 법률로서 품목별로 관세율을 정하고 있음
- 품목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해서는 ‘통일시스템에 관한 국제조약 (HS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름

- 관세감정조치법

- 특혜관세수익국(특별특혜수익국을 포함)의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확인이 필요함
-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수출 할 때 해당 국가에서 발급되는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해야 함(총금액 20만 엔 이하는 불필요)
- 일본에 수입되는 화물은 각각의 일본 내 법령에 의해 수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법령의 규제는 관세법 수입허가제와 연관되어 실효성을 가지고 있음
- 화물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관세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해 허가·승인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타 법령 규정에 근거하여 허가·승인을 받고, 수입신고 또는 해당신고에 관한 심사(검사) 시 세관에 증명 및 확인을 받아야 함
- 또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는 수입국의 정부기관의 인증 등을 취득하지 않으면 허가·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식품위생법

- 농수산물 중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 및 항생물질 등 농수산물의 화학물질 등의 잔류에서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물, 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함
- 수입식품에 관해서는 법률에 의해 부두·공항에 있는 검역소에서 검역 및 감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수산자원보호법



- 수산자원의 확보, 보존 및 증가를 위해 어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7년 10월 개정된 이법은 수산 수입방역제도의 대상이 되는 잉어, 무지개 송어, 블랙타이거새우 등의 수입시 수입허가가 필요함

● 외래생물법

- 특정외래생물의 양식, 재배 또는 운반, 수입, 취급 규제와 특정외래생물 방제를 위해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피해를 방지하고 생물의 다양성 확보, 사람의 생명 및 보호와 함께 농림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 향상을 목적으로 함
- 특정외래생물은 해외에서 일본으로 들여와 본래 생식지 또는 생육지 바깥에 생존하는 생물을 말함. 아쿠타루루스(Ictalurus), 파이크(Pike), 선피쉬(SunFish), 모로네(Morone), 자리가니(Crayfish)등이 특정외래생물로 지정되어 수입이 금지됨(특정 외래생물은 환경성 홈페이지를 참조)

● 검역법

- 검역법은 일본 내에 존재하지 않은 감염증의 병원체가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일본 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박·항공기에 대해 감염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수산물 수입은 수입금지지역의 지정은 없으나 콜레라 감염지역 또는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의 수산물은 검역 법에 근거하여 검사의 대상이 됨

● JAS법(농림물자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JAS법은 ‘JAS규격제도와 품질표시제도’ 이 2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 JAS규격제도는 일본농림규격(JAS규격)에 의한 등급설정 검사에서 합격한 제품에 대해 JAS마크 부착이 가능하고 제품의 규격화, 유통의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임
  - 품질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 시 도움을 위해 모든 식료품을 대상으로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제조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임
- 주류(주세법), 약사법에 규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은 JAS법의 대상에서 제외됨
- 수산물 품질표시에 있어 활어의 경우 품명, 원산지 표시가,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품명, 원재료, 내용량, 제조업자, 상미기한, 보관방법 등의 표시가 의무화 됨
- ‘수산물품질표시기준’, ‘생선식품품질표시기준’, ‘가공식품품질표시기

준', '어패류의 명칭가이드라인' 등의 구체적인 표시사항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

## ■ 품목별 관련법규

### ● 수산물 및 동조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적용되는 주요관련법규

HS코드	품목	주요관련법규
0301	어류(활어)	식품위생법, 검역법, JAS법, 수산자원보호법
0302	어류(생선, 냉장, 피레트 제외)	식품위생법, 검역법, JAS법
0303	어류(냉동, 피레트 제외)	식품위생법, 검역법, JAS법
0304	어류 피레트	식품위생법, 검역법, JAS법
0305	어류(건조, 염장, 훈제)또는 어분, 피쉬밀	식품위생법, JAS법
0306	갑각류(활, 생선, 냉동, 건조, 염장)	식품위생법, 검역법, JAS법, 수산자원보호법
0307	연체동물(활, 생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훈제)	식품위생법, 검역법, JAS법, 수산자원보호법
16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의 엑기스 및 주스	식품위생법, JAS법
1604	어류, 캐비어 및 어류알 조제 캐비어 대용품	식품위생법, JAS법
1605	갑각류, 연체동물의 조제품	식품위생법, JAS법

### ● 워싱턴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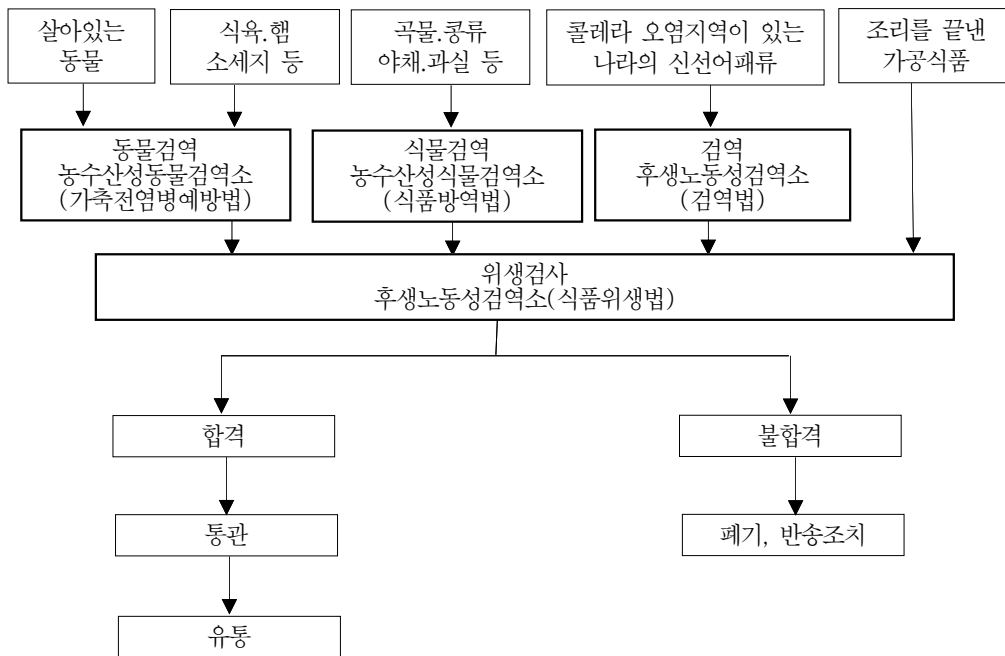
- 워싱턴조약(CITES)은 야생동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한 것으로, 수출국과 수입국이 협력하여 야생동물의 채취, 포획을 억제하고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일본은 1980년, 한국은 1993년에 가맹하였고 현재 170개국에 가맹되어 있음
- 조약의 본문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동식물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를 「부속서」라고 하며 규제가 엄격한 순으로 I, II, III으로 구분되어 있음
  - 부속서 I에 분류된 어류는 실러캔스 (Coelacanth)등 멸종할 위험이 있는 동식물로 원칙적으로 상업거래가 금지됨
  - 부속서 II에 분류된 동물은 철갑상어목 등 국제거래를 엄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로 상업거래가 가능함. 수출국 관리당국이 과학당국의 조언을 얻어 발행하는 수출허가서가 필요함
  - 부속서 III에 분류된 동물은 수출국의 수출허가서가 필요 (특정국에서 특정종을 수입). 그 외에는 원산지증명서등의 첨부가 필요함

- 부속서Ⅱ.Ⅲ에 해당하는 종을 지정한 특정국에서 수입 할 경우에는 해당국의 수출허가서, 그 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경제산업성의 사전확인이 필요함
- \* 워싱턴조약의 지정동물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참조

■ 검역제도

- 식품검역은 후생노동성이, 동식물의 검역은 농림수산성이 담당함. 전국의 주요 공항·부두에 설치된 검역소(후생노동성관할)또는 동물검역소, 식물검역소(농림수산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검사수속
  - 검역과 관련한 검사의 수속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소관 검역소 식품감시담당과에 식품수입신고서를 2부 제출한 후, 검역소에서 심사·검사 후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완료’라고 날인 후 반환됨

<수입심사·검사의 흐름>



● 수산물의 성분 기준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어육가공식품, 연어알·연어알젓, 명란젓, 삶은문어(냉동), 생식용굴, 생식용 냉동어패류의 시험방법 및 성분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음

품 목	기 준
어육가공식품	대장균군 : 음성(으깬어육 제외)(1gx3 중,B.G.L.B 배지법) 아초산균 : 0.050g/kg이하 (단,어육소세지,어육햄)
연어알, 연어알젓, 명란젓	아초산균 : 0.050g/kg이하
냉동 삶은 문어	세균수 : 100,000/g이하 (표준평판배양법) 대장균군 : 음성(0.01gx2 중 테키시코레이트배지법)
생식용굴	세균수 : 50,000/g이하(표준평판배양법) E.Coli 최대 확인수 : 230/100g이하(EC배지법)
생식용냉동어패류	세균수 : 100,000g이하(표준평판배양법) 대장균군 : 음성(0.01gx2 중 테키시코레이트배지법)

● 첨가물 규제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해 참치, 방어 등의 생선에 탄산가스(CO<sub>2</sub>)첨가 금지
- 양식수산물의 생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항생물질과 항균성물질 사용 케이스가 많아, 일본 기준규격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음. 항생물질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만 0.10ppm까지 잔류가 인정됨
- 북어는 수출국정부기관 발행의 어종, 채취해역 등에 관한 위생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또한 심사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관이 입회하여 현장검사가 진행됨
  - 합격할 경우 : 식품 등 수입신청서'에 합격 '도장'을 찍음
  - 불합격할 경우 : 폐기, 반송조치·지도
- 냉동 생식용 토막생선·껍질제거 생선은 냉동식품의 규격이 적용됨
  - 동 규격에서는 세균수가 검체 1g에 100,000이하로 대장균수가 음성일 것
- 가열 후에 냉동 처리된 수산물(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은 검체 1g당 세균수가 3백만 이하로 대장균(E.coli)이 음성일 것
- 건조, 염장 등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보존료 등 첨가물의 사용기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수입식품감시지도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식품 안전부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수입식품 감시·지도를 위해 매년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에 따라 식품, 첨가물, 식기 및 용기포장, 장난감 수입에 대해서도 계획이 발표되어 2011년 4월 1일~ 2012년 3월 31일까지 실시 함
- 특히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상황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범위반이 발견된 경우 수입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모니터링검사 실시
  - 검역소는 모니터링계획에 규정된 건수의 검사를 실시함
  - 생산국가에서 식품 회수와 건강피해 발생 사례가 있는 경우, 모니터링검사 등에 의해 범위반이 발견된 경우 필요시 검사를 강화함. 또한 수입 시 위 반사례와 해외정보 등에 따라 본 계획 실시 중에도 검사횟수를 늘릴 수 있음

<2011년도 수산물 모니터링계획>

식품군	검사항목 <sup>1)</sup>	조사 건수	검사 계
수산식품 이매패류 어류 갑각류(새우,게)등	항균성 물질 등	2,700	5,630
	잔류농약	2,000	
	첨가물	200	
	성분규격 등	700	
	방사선조사	30	
수산가공식품 어류가공품(토막,건조,으깬것) 냉동식품(수산동물류,어류) 어패류알가공품 등	항균성 물질 등	4,100	13,720
	잔류농약	3,200	
	첨가물	1,900	
	성분규격 등	4,500	
	방사선조사	20	

1) <검사항목>

- ①항균성물질 :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 ②잔류 농약 : 유기린계, 유기염소계, 카바메이트계, 비레스로이드계
- ③첨가물 : 보존료, 착색료, 감미료, 산화방지제, 방부제 등
- ④성분규격 : 성분규격으로 인정되는 항목(세균수, 대장균수, 장염비브리오 등)  
병원미생물(장관출혈성대장균0157, 리스테리아균 등)  
패독(설사성패독, 마비성패독) 등
- ⑤곰팡이균 :아플라톡신, 디옥시니발레놀, 파툴린 등

- 검사 명령의 실시

-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 후생노동대신이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 때마다 수입자에 대해 검사 명령을 하게 됨
- 검사 대상 이외의 식품도 수입신고 심사 중 검사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2011년 4월 1일~2012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검사명령을 받을 대상국, 품목, 제조업자 리스트를 발표함. 아래 대상업체는 전수입품목에 대해 등록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음

[사례] 검사명령 대상 중 한국산 수산식품 수출업체현황

<한국산 생식용 키조개>

대상국	품목 및 내용	제조사명
대한민국	생식용 키조개 장염 비부리오	1) H** FISHERY CO.,LTD
		2) S** TRADING CO.,LTD
		3) S** TRADING CO.,LTD

<한국산 생식용 피조개>

대상국	품목 및 내용	제조사명
대한민국	생식용 피조개 장염 비부리오	1) G* TRADING CO.,LTD
		2) S* CO.,LTD
		3) D* PRODUCTS INDUSTRY
		4) S* CO.,LTD
		5) S* TRADING CO.,LTD
		6) S* TRADING CO.,LTD
		7) K* TRADING CO.
		8) T* MULSAN
		9) J* MOOLSAN CO.,LTD
		10) J* PRODUCTS CO.,LTD
		11) K* FISHRY CO

⑥방사선조사 :방사선조사의 유무



- 검사 명령의 해제

- 법을 위반한 식품 등이 수입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명령을 해제하고 일반적인 감시체제로 돌아감
- 검사 명령해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수입업자가 검역 모니터링 검사에 의해 위반사항이 나오는 경우 수입되는 물량 검사를 전수의 30%로 강화하고 또 다시 위반사례가 나오는 경우 전수검사로 이어지므로 수출업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한국산 양식넙치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해제 사례>

품목	한국산 양식넙치 및 그 가공품	통지날짜	2011년 6월 3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양식장에서 양식되고, 또 등록수출업자로부터 수출된 것</li> <li>•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엔로플로삭신 등</li> <li>• 양식가공넙치는 한국정부에 등록된 양식장에서 양식된 광어를 등록된 가공장에서 가공하고, 또한 등록수출자로부터 수출된 것</li> </ul>		

\* 단, 아래의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엔로플로삭신(enrofloxacin)에 관한 검사명령을 면제하지 않음

업체명	등록번호
1) T*수산	K-F-JN-****
2) S*수산	K-F-JN-****
3) I*수산	K-F-JN-****
4) H*수산	K-F-JN-****

<한국산 가리맛조개 검사명령 해제>

수입 시 검사실적을 확인한 결과 아래의 식품 및 검사 항목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 23조에 의해 수입식품감시제도계획의 검사명령의 해제 요건을 만족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통지 함

검사품목	한국산 가리맛조개 가공품	통지날짜	2011년 6월 17일
검사항목	엔돌스판		
내용	기준치(0.004ppm)를 넘는 엔돌스판이 검출될 우려가 있음		
특이사항	조갯살, 껍질제거 한 것에 한함		

■ 수입식품위생법 위반사례

- 「수입식품감시제도계획」에 따른 수입식품 모니터링검사 결과 2010년11월~2011년 8월까지 한국산 수산물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음

<냉동 간굴>

품명	냉동 간굴	제조사	S* CO.,LTD. W* CO.,LTD.
담당검역소	오사카	수입자명	伊* 株式会社 株式会社 *
부적합내용	설사성패독 0.1MU/g 검출		
조치사항	폐기, 회송 등을 지시 (전량보관)		
비고	2011년 7월, 명령검사		

<키조개 패주>

품명	생식용냉동신선어패류: 키조개패주	제조사	S* CO.,LTD.
담당검역소	시모노세키	수입자명	*商事
부적합내용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 $1.0 \times 10^6/g$ )		
조치사항	폐기, 회송 등을 지시 (전량보관)		
비고	2011년 7월, 자주검사		

<냉동어육반죽>

품명	냉동어육반죽	제조사	H* CO.,LTD.
담당검역소	센다이	수입자명	有限会社 *
부적합내용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군 음성)		
조치사항	폐기, 회송 등을 지시 (전량보관)		
비고	2010년 12월, 자주검사		

<미역국>

품명	가열후섭취냉동식품(동결직전미가열) 미역국	제조사	S* CO., LTD.
담당검역소	동경	수입자명	株式会社 *
부적합내용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 $4.0 \times 10^6/g$ )		
조치사항	폐기		
비고	2010년 12월, 자주검사		

<문어젓갈>

품명	문어젓갈	제조사	G* CO.,LTD.
담당검역소	간사이공항	수입자명	株式会社 G*
부적합내용	사용기준부적합(폴리솔리베이트 80/0.077g/kg검출)		
조치사항	폐기, 회송 등을 지시 (전량보관)		
비고	2010년 11월, 자주검사		

## ■ 라벨링제도

-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표시사항
  - 후생성에서 관할하며 섭취 시 위생상 유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포장을 한 가공식품, 식육, 계란 등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표시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음
    - 명칭
    -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 보존방법
    - 제조소 또는 가공소소재지
    - 제조자 또는 가공자명
- 「JAS법」 상의 식품표시사항
  - 농림수산성이 관할. 품질표시기준은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생선식품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음
    - 생선(生鮮)식품 : 명칭, 원산지를 표시, 포장의 경우 내용량, 판매업자명 및 주소가 의무표시 사항임
    - 가공식품 :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보존방법, 제조업자명 및 주소, 수입의 경우 원산국명은 의무표시 사항임
  - \* 2008년 4월 1일부터는 업자간 거래에서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수산물품질표시기준’에 따른 식품표시사항
  - 수산물 품질에 관해 판매업자가 표시해야 할 사항
    - 냉동 한 것을 해동 할 경우 ‘해동’ 이라고 표시
    - 양식의 경우 ‘양식’ 이라고 표시
- ‘생선(生鮮)식품품질표시기준’에 따른 식품표시사항
  - 이 기준은 2000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에 의해 생선식품의 공통표시사항의 명칭, 원산지를 표시하고 재포장된 경우는 내용량, 판매업자명 및 주소도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표시기준
    - 원산지 : 국산품은 수역명 또는 지역명 (양식장이 속한 행정구역명)
    - 수역명 표기가 어려운 경우 : 어획한 항명 또는 행정구역명

- 수입품 : 원산국명 (수역명 병기 가능)
  - 해동물, 양식물은 반드시 표기가 필요함
  - 소매판매업자 : 용기포장의 잘 보이는 곳 또는 제품에 근접한 장소
  - 도·소매업자 : 용기포장이외에 발송장 또는 납품서에 표시해도 무방
- 표시방법
- 어류(라운드, 세미도레스, 도레스, 필레, 토막, 회(모듬제외), 껍질제거생선, 단순냉동 및 해동, 살아있는 것을 포함)
    - 예 민물어류/농어·도미·민어류/청어·정어리류/다랑어·참치·고등어류/전갱이·방어·만새기/대구류/가자미·광어류/연어·송어류/기타어류
  - 패류
    - 예 재첩·우렁이류/굴류/가리비류/피조개·꼬막/대합·바지락류/명주조개류/전복류/소라류/기타패류
  - 수산동물류
    - 예 오징어류/문어류/새우류/대하·부채새우·가재류/게류/기타갑각류/성게·해삼류/거북류/기타수산동물류
  - 해산포유동물류
    - 예 고래/돌고래/기타해산포유동물류
  - 해초류
    - 예 다시마류/미역류/김류/파래류/한천원초류/기타해초류
-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에 따른 식품표시사항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식품(용기에 넣어 포장된 것에 한함)의 공통 표시사항

<표시기준>

명칭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 품명, 종류별 표기도 가능
원재료명	식품첨가물이외의 원재료는 중량순으로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 식품첨가물은 중량순으로 기재
원료원산지명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별 * 별표2에 해당하는 것은 원료원산지를 표기
내용량	포장의 중량을 빼고, 내용물의 순중량을 표시
상기기한	품질이 급속하게 변화하기 쉬운 경우 소비기한을 기재
보존방법	상온보존의 경우는 생략 가능
제조업자 이름 및 주소	수입품은 수입업자명을 기재

- 수입품에 있어서는 ‘원산국명’을 기입
- 별표2에 해당하는 품목
  - (a) 건조어패류, 염장어패류, 찌서 말린 어패류, 및 다시다, 건조김, 구운김, 기타 건조한 해초류(얇게 채썰거나, 얇게 다진것 또는 분말형태는 제외)
  - (b) 염장어패류 및 염장해초류
  - (c) 조미한 어패류 및 해초류 (가열조리 및 조리냉동식품에 해당하는 통조림, 병조림 및 레토르트파우치식품은 제외)
  - (d) 다시다말이
  - (e) 데치거나 삶은 어패류 및 해초류(통조림, 병조림 및 레토르트파우치 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f) 표면을 그슬린 어패류
  - (g) 후라이로서 튀김옷을 입힌 어패류(가열조리 및 조리 냉동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h) 생선(生鮮)식품을 이중 혼합한 것(절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섞어 담은 것은 제외)

- 표시방법

- 용기 또는 포장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
- 표시에 사용되는 문자는 8pt 이상 통일된 문자사용
- 표시면적(포장면적 중 표시가능한 모든 면적)이 150cm<sup>2</sup> 이하로 5.5pt~ 7.5pt로 표시가능
- 표시면적이 30cm<sup>2</sup> 이하는 원재료 등 생략이 가능
- 일괄표시 예: 아래 표와 같은 순으로 일괄표시하며 면적이 좁은 경우 분할하여 표시가능

명칭  
원재료명  
원료원산지명  
내용량  
고형량  
내용총량  
상미기한  
보존방법  
원산국명  
제조사

● ‘어패류의 명칭 가이드라인’에 따른 식품표시사항

- 어패류는 수입종이 다양할 뿐더러 동일 어종이라도 지역 및 성장단계에 따라 명칭이 상이함. 이에 따라 어패류 명칭에 관해 의견을 모집 한 후 검토하여 2003년 3월부터 적용
- 현재 이 가이드라인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앞으로 운영 상황과 유통실태 변화 등으로 변경이 될 수 있음
- 생선어패류의 명칭
  - 일반적 규칙
    - (a) 어패류 종과 바다 명칭표시 : 익숙하지 않은 표준명칭 보다 소비자가 알기 쉬운 일반 명칭을 표시

표준 일본식명	일반으로 사용되는 명칭
노란아귀(キアッコウ)	아귀(アッコウ)
북극적새우(ホッコクアカエビ)	단새우(アマエビ)、남방새우(ナンバンエビ)

(b) 복수의 어패류는 총칭을 표시

표준 일본식명	총칭
대합 조선대합 중국대합	대합(ハマグリ)

(c) 표준일본식명이 없는 종의 명칭표시 : 원산국의 명칭, 통상거래명, 학명 등을 표시

학명 (원산국에서의 명칭)	표시
Sardina pilchardus (サーデイン)	정어리(イワシ)

· 성장명 : 성장단계에 따른 명칭을 표시

방어	동경	와카시(ワカシ)→이나다(イナダ)→와라사(ワラサ)→부리(ブリ)
	오사카	쯔바스(ツバス)→하마치(ハマチ)→메지로(メジロ)→부리(ブリ)

· 계절명 : 계절에 따른 명칭

연어(사케)	아키사케(가을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회귀한 것)
	토키사케(봄부터 초여름 연안에 회귀한 것)

- 지방명 : 지역특유의 명칭이 있는 생선어패류의 경우 지방명에 표준 일본 식명을 병기

표준 일본식명	지방명(대상지역)
황돔 (キダイ)	하나도미 ハナダイ / (神奈川県)

- 해외어장 어패류 및 외래종 : 표준일본식명칭이 없어 일반규칙에 따라 명칭 표기

학명	사용가능한 명칭	사용하지 않는 명칭
Ictalurus punctatus	아메리카메기, 차넬카트피쉬	시미즈다이, 카와후구

- 교잡종 (hybrid)·개량종 : 인위적으로 교배된 어패류의 경우 교잡에 사용된 명칭을 기재

교잡종인 부리히라 (긴키대학의 등록상표)	부리 X, 히라마사 (교잡종)
------------------------	------------------

- 수산물가공품의 원재료명

-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에 의해 가공품의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과 원재료에서 접하는 중량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재료명을 표시
- 원재료가 어류 및 어육으로 특정 종류 어류 명칭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원재료명으로 '어류' 또는 '어육'이라고 표기
- 개별의 품질표시 기준과 일본농림규격이 정해진 경우(마른멸치류, 가다랑어포, 마른미역, 염장미역, 성계가공품, 성계무침, 특수포 장어묵, 풍미어묵, 뱀장어가공품, 수산물통조림 및 병조림, 조리냉동식품, 어육햄 및 어육소세지)는 그 기준과 규격에 따라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함
- 일반적 규칙 : 수산물가공품은 일반적으로 가공도가 낮고 원재료가 대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부터 가공도가 높고 복수의 원재료가 혼합 사용된 것 등 다양함. 따라서, 원재료명에 대해서는 신선어패류의 명칭규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품목특성에 따라 그 내용을 표시하고 있음

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원재료명
가자미포(かれい干し物)	찢가자미(むしがれい)



- 수산물가공품의 브랜드명(상품명) : 브랜드명은 JAS법에 의해 수산물가공품의 명칭과 원재료명이 아니므로 명칭과 원재료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한편, 브랜드명을 임의로 상품에 표시하는 것은 무방하나, 경품 표시법에 부당표시와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표시금지사항에 해당할 만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됨

수산물가공품 브랜드 명	시즈오카산 뱀장어구이(静岡産鰻蒲焼)
수산물가공식품 명칭	뱀장어구이(うなぎ蒲焼き)
원재료명	뱀장어 (시즈오카현)

※ 뱀장어가공품, 마른전갱이, 고등어는 각각 수산가공품품질표시기준에 의해 원료·원산지의 표시가 의무화 되어있음

● 기타 표시사항

- JAS마크 부착

- 어육햄, 소세지등의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통관 후에 JAS등록인정기관에 신청에 의해 JAS마크를 붙이는 것이 가능함. JAS마크의 부착여부는 강제규격 사항은 아님
- 수산물 조정품에 대해서는 특수포장 생선어묵류, 성계가공품, 풍미조미료, 게 무침, 가다랭이포, 어육햄·소세지, 풍미어묵, 찌서말린 어류 등이 있음

- 알레르기 표시

- 후생성에서 지정한 알레르기 유발 특정원재료(25개 품목)  
: 새우, 게, 소맥, 메밀, 계란, 우유, 땅콩,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키위후르츠, 쇠고기, 호두,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등
- 발생빈도와 위험도에 따른 표시 의무화 품목(7개 품목)  
: 새우, 게, 소맥, 메밀, 계란, 우유, 땅콩 등
- 그 외 18항목에 대해서는 표시를 장려하고 있음
- 일괄표시 : 사용된 모든 원재료의 뒤에 (원재료의 일부에 ○○, ▲▲를 포함)라고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표시



– [http://www.maff.go.jp/j/jas/hyoji/kijun\\_itiran.html](http://www.maff.go.jp/j/jas/hyoji/kijun_itiran.html)

- 후생노동성의약품국 식품안전부기준심사과
  - <http://www.mhlw.go.jp/>
- 수입식품감시 업무 홈페이지
  - <http://www.mhlw.go.jp/topics/yunyu/tp0130-1.html>
- 워싱턴조약 (멸종 위험이 있는 양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 <http://www.meti.go.jp> Tel : 03-3501-1511(대)
- 워싱턴조약 사무국
  - <http://www.cites.org>
- 식품위생법 후생노동성 의약품국 식품안전부기획정보과
  - <http://www.mhlw.go.jp> Tel : 03-5253-1111
- 식품위생법 제26조 제3항에 근거한 검사명령에 관한 별도지시 (2011년)
  - <http://www.mhlw.go.jp/topics/yunyu/kensa/2011/02.html>
- 관세법. 관세정율법. 관세임의소치법 관세
  - <http://www.customs.go.jp>
  - Tel : 03-3529-0700
- 환경성 자연환경국(왜래생물법)
  - <http://www.env.go.jp>
  - Tel : 03-3581-3351
- 수입발표에 관한 문의
  -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농수산실(수산반)
  - Tel : 03-3501-1511 내선 3261
  -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import/wariate/suisanbutsuhappyo.htm](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import/wariate/suisanbutsuhappyo.htm)
- 도쿄복지보건국
  -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shokuhin/jas/hikaku.html>

- 식품표시-품질표시일람(품목별개별기준)
  - [http://www.caa.go.jp/jas/hyoji/kijun\\_Itiran.html](http://www.caa.go.jp/jas/hyoji/kijun_Itiran.html)
- 세관 수속 및 관세, 세율에 관한 문의(관세상담창구)
  - <http://www.customs.go.jp/question2.htm>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 수입무역관리령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농수산실 Tel : 03-3501-0532 (직통)
- 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법률(종의 보존법) :
  -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생물과 Tel : 03-3581-3351 (대표)
  - <http://www.env.go.jp/nature/yasei/hozonho/espal.html>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수입수속에 대해서(후생노동성 검역소)
  - <http://www.mhlw.go.jp/topics/yunyu/tp0130-1a.html>
- 잔류농약 등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
  - <http://www.ffcr.or.jp/Zaidan/FFCRHOME.nsf/pages/MRLs-n>
- 알레르기물질을 포함하는 가공식품의 표시 핸드북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기준심사과
  - Tel : 03-5253-1111 (내선2484, 2921)
  - <http://www.mhlw.go.jp/qa/syokuhin/allergy/index.html>
- 소비자청 - 알레르기 물질에 관한 식품 회수
  - <http://www.caa.go.jp/foods/index.html#m05>
- 2009년 9월 1일부터 식품표시에 관한 업무는 소비자청으로 이관
  - 소비자청 <http://www.caa.go.jp/representation/index.html> Tel : 03-3507-8800 (대표)
- JETRO
  - [http://www.jetro.go.jp/world/japan/qa/importproduct\\_01/04M-010913](http://www.jetro.go.jp/world/japan/qa/importproduct_01/04M-010913)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jftc.go.jp>

## 2. 품목별 수입정보

### (1) 활 넙치

#### ■ 관세정보

- HS코드
  - 0301.99-220 (활넙치 수입 시 적용되는 코드)
- 관세율

기본	WTO협정 (한국)	특별특혜 (LDC)	경제연계협정(EPA)			
			멕시코	칠레	아세안	필리핀
5%	3.5%	무관세	무관세	0.6%	3.5%	1.2%

자료: 일본관세협회

※ '09년까지는 HS번호 0301.99-290(활어로 넙치, 붕장어, 복어, 갯장어 포함)에 활 넙치가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10년부터 활 넙치의 HS번호 0301.99-220 생성

#### ■ 통관 시 주의사항

-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품목

품 명		HS code	품 명		HS code
바지락	활, 신선, 냉장	0307.81-480	피조개	활	0307.91-420
성게	신선, 냉장	0307.91-430	전복	활, 신선, 냉장	0307.91-450
	활	0307.91-110		냉동	0307.99-142
	냉동	0307.99-131	새우	활	0306.23-110
	건조, 염장, 염수장	0307.99-231		냉동	0306.13-000
재첩	활, 신선, 냉장	0307.91-470	낙지	냉동	0307.59-100
대게	대게	0306.34-121	대합	활, 신선, 냉장	0307.91-410
	붉은대게	0306.34-139	성게·해삼의 조제품		1605.30-220
	냉동	0306.14-020	넙치		0301.99-220
털게	활, 신선, 냉장	0306.24-140			
	냉동	0306.14-040			

※ 품명기준으로 12개 품목임

● 검역관련 주의사항

- 일본후생성에서 '11년 10월 21일자로 한국산 광어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30% 강화 발표
- 한국산 광어에서 '구도아' 라는 식중독균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향후 일본 모니터링 검사 결과, 구도아 균이 검출될 경우 냉동(-30도, 1일이상) 또는 가열처리(중심온도 75도, 5분 이상) 하여 판매하도록 검역소 지시가 이루어진다고 함

■ 수입바이어 견해

- 한국산 양식넙치는 일본산에 비해 육질이 좋으며 품질이 좋아 높게 평가됨
- 5~6월은 일본산 활 넙치의 출하시기여서 한국산은 7~8월부터 수요가 증가함
- 겨울철(11~1월) 가격은 1kg당 1,100~1,400엔 전후 가격이 적당함
- 일본에서 선호하는 사이즈는 1.1~1.2kg 임
- 일본 소비자들은 일본자연산 색과 비슷한 밝은 노랑색 넙치를 선호함
- 대금결제는 도매시장은 15일, 활어센터는 2개월 정도 소요됨
- 3월 발생한 지진과 방사능오염 피해로 동경지역의 소비가 위축되어 수입산 감소 추세

■ 운송관련 정보

- 5개의 항구와 1개의 공항에서 수입되고 있음. 시모노세키 항으로의 수입이 58.5%로 가장 많고 하카타 항이 26.1%, 오사카 항이 15.3%로 뒤를 이으며, 3개항의 수입이 99.9% 임
- 항공편의 수입은 홋카이도 치토세 공항으로 320kg가 수입됨

<2010년 활 넙치 운송형태 및 세관별 수입동향>

(단위: kg, 천 엔)

	운송형태	물량	금액	세관별 물량점유율
<b>수입 합계</b>		<b>3,963,521</b>	<b>4,669,578</b>	
<b>한국</b>		<b>3,963,521</b>	<b>4,669,578</b>	<b>100%</b>
오사카(大阪)	해상컨테이너	604,789	719,039	15.3%



	운송형태	물량	금액	세관별 물량점유율
모지(門司)	해상컨테이너	3,320	3,722	0.08%
하카타(博多)	해상컨테이너	1,033,428	1,186,923	26.1%
<b>시모노세키(下関)</b>	<b>해상컨테이너</b>	<b>2,318,903</b>	<b>2,755,691</b>	<b>58.5%</b>
미이케(三池)	해상컨테이너	2,761	3,643	0.07%
치토세(千歳)	항 공	320	560	0.008%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 한·일 간 활어차 운행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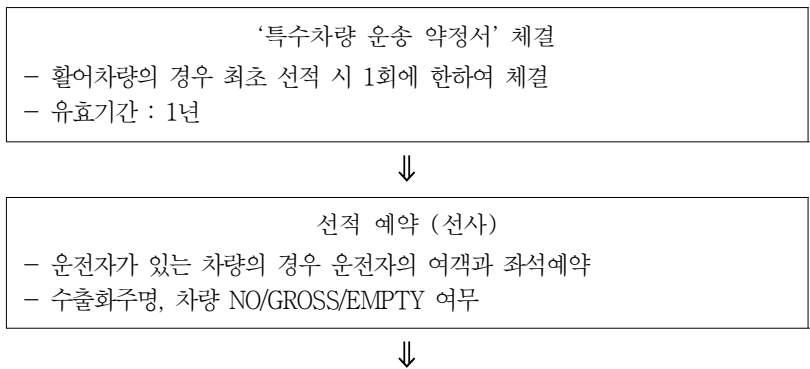
- 한국 활어차는 일본 내 운행제한으로 수입 항구에서 일본 활어차로 환적
- 1일 활어차 유입량
  - 오사카 항 : 2~5대
  - 시모노세키 항 : 15~20대
- 활어차 평균 적재량
  - 약 2.5톤 (5톤 차량기준)
- 한일 간 주요 수출입품목
  - 한국 : 넙치, 전복, 복어
  - 일본 : 멧게, 가리비, 멧태, 돌돔
- 활 넙치 수입경로
  - 부산 → 오사카/시모노세키 항

● 한국특수차량(활어차량) 카페리를 이용한 운송 시 구비서류 및 절차

- 차량등록증상에 용도가 ‘특수차량(활어운반차량)’으로 되어 있거나 비고란에 ‘활어운반차량’ 표시가 되어있는 차량만 세관에서 인정하여 ‘차량일시수출입신고필증’을 교부함. 이 신고필증이 있어야만 선적이 가능함
- 차량의 전원장치 4구 콘센트(220V) 구비
  - 차량은 본선 안에서 차량자체엔진의 가동을 금지하는데 전원장치에 의한 산소공급장치의 가동이 되어야 하므로 전원장치의 구비를 요함
- 활어차량 보험가입 (화주선택사항)
  - 보험료를 왕복적용 (차량의 INVOICE에 따라 차등)
  - 보험가입 시 계약자는 활어차를 선적, 운항하는 선사가 되어야함  
(※피보험차는 차량소유자)

-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선적하는 수출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차량등록증 및 차량소유자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보험료를 지불한 후 선사에 통지
-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선사에 전달하고 선사는 일정기간동안 보관
- 선사와 차량소유자간에 ‘특수차량운송약정서’ 체결 (유효기간 : 1년)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및 영문 등록증 발급
  -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증 유효기간 : 1개월
  - 서울관할 등록차량의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 및 발급,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함
- 영문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관우회에서 ‘차량일시수출입신고서’작성 및 세관차량계에 신고
  - ‘차량일시수출입신고서’에 세관의 관인 수령
  - 발생비용 : 신고서 작성료 10,000원
- 일시수출입신고필증을 2부 복사 후 선사에 1부를 제출, 본선 선적시 포맷에 게 1부 전달, 원본은 한국에 재입국시 세관차량에게 다시 제출하여 입국확인
- 한국차는 원칙적으로 한국국적 선박에만 선적이 가능하나, 일본국적 선박에 선적을 원할 시에 ‘자주안전적합증서’를 교부받아야 가능함
  - 일본 내국법에 의해 일본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기준 테스트

● 한국특수차량(활어차량)의 물류흐름도



차량등록업소 신고 및 영문등록증 발급

- 관할차량등록사업소에 일시수출 신고
- 유효기간 : 부산 1개월, 서울 1회



적입 작업

- GROSS로 선적 시 적입작업 완료 후 CY도착, S/R 및 수출면장 → B/L발급  
(\*CY : Container가 적·양하 전후에 일단 입고되는 곳)



차량통관 (세관차량장)

- 세관검사 후 '차량 일시수출입 신고필증' 수령
- 영문차량등록증, 수출입 화주의 명판·직인



일시수출입 신고필증 복사본 전달

- 2부를 복사한 후 운전자가 있을 시 영문이름 기재 후 선사에 1부를 전달
- 선적 시 포맨 확인용 1부 소지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 보험회사에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본적 선적

- 선적 시 차량통관 확인용으로 필증 복사본 1부를 포맨에게 전달 수 선적



선적 후 완료보고(세관차량장)

- 선사에서 특수차량 반출목록 작성 후 팩스 송신



도착일 전 입항예정보고 (세관차량장)

- 한국 재입국 전일 특수차량반입목록 작성 후 팩스송신



부산 항 도착



한국 재입국 보고 및 일시수출입 신고필증 반납  
- 일시수출입 신고필증 원본의 세관반납 및 차량 재검사

● 일본특수차량 카페리를 이용한 운송 시 구비서류 및 절차

- 특수차량의 종류 (\* 특수차량 : 수출입 물품의 특성상 변질 또는 가치의 현저한 감소나 기타 차량의 이적이 심히 곤란한 물품을 운반하는 차)

- 초저온 냉동차
- 활어차
- 무진동 차량 등

- 통관 시 구비서류

- 선적지 선사에서 작성한 트럭 리스트(Truck List)
- 자동차 검사증
- 수입신고필증 (수입화물이 적재된 경우 화물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 수출입 화주의 명판 직인 자동차일시수출입신고필증 (도착지 세관장의 직인 필수)

- 통관 시 제비용

- 보험료 : 세관 차량장에 출장을 나오는 보험사에 부보 및 보험료 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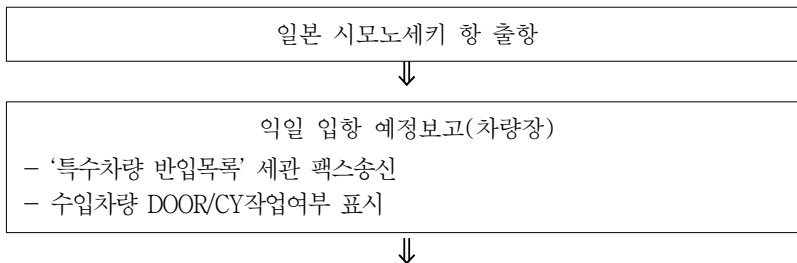
채류일수	4일	6일	8일	10일
보험료 (동부화재 기준)	56,500원	64,500원	72,500원	80,500원

- 관세보증료 : 관우회에 지불,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1차량 당 70,000원, 인지대 없음

- 재수출시 처리절차

- 선적 선사에서 수출차량에 대한 트럭리스트(Truck List) 작성
- 수입통관 시 교부받은 '자동차일시수출입신고필증' 원본을 차량장에 반납 및 사본에 반납확인 세관직인을 날인하여 적재선박의 포맨에게 제출, 선적 선사는 '세관제출용Truck List'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 일본특수차량의 물류흐름도



부산 항 도착



DOOR 작업



차량통관 (세관차량장)

-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필증' 수령, T/R LIST, 차량 검사증, 수출입업체의 명판 직인, 수입화물이 있을 시 수입면허 및 D/O, 관세보증료, 보험료 지불



일시수출입 신고필증 복사본 전달/출발

- 2부를 복사한 후 선사에 1부 전달, 재수출 시 1부 사용
- 梅久 트럭의 경우 SEAL 수령



하역/적입 작업

- 수출화물 적입 시 수출 S/R 및 면장접수



C/Y도착 (B/L 발급)

- 차량재통관(세관차량장) 일시수출입신고필증 원본 세관 제출 및 복사본 상에 세관직인을 득함



본적 선적

- 포맨이 DOOR T/R 세관재통관 확인 후 선적
- 일시수출입신고필증 복사본에 세관직인 확인



선적 후 완료보고(세관차량장)

- 특수차량 반출목록 작성 후 팩스송신
- DOOR/CY작업 여부 표시



차량재통관 확인서류회수

- 포맨은 선적 시 회수한 복사본 선사전달

■ 활 넙치의 수입동향

- '10년 활 넙치는 한국에서만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물량은 3,964톤이며 수입금액은 46억 7천 만 엔임

<활 넙치 수입동향>

(단위: 톤, 백만 엔)

	물량				금액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전 체	7,410	7,075	3,964	△44.0	9,140	7,104	4,670	△34.3
한 국	5,727	6,249	3,964	△36.6	6,532	6,216	4,670	△24.9
중 국	1,660	796	-	-	2,555	828	-	-
대 만	24	30	-	-	52	60	-	-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2) 생 굴

■ 관세정보

- HS코드
  - 0307.10-100 (살아있는 것, 신선 및 냉장, 냉동한 것)
- 관세율

기본	WTO협정 (한국)	특별특혜 (LDC)	경제연계협정(EPA)		
			멕시코	아세안	필리핀
10%	7%	무관세	무관세	6.3%	3.5%

자료: 일본관세협회

■ 통관 시 주의사항

- 검역관련 주의사항
  - 굴의 산란기(5~8월)에는 프랑크톤 발생이 많아 식용할 수 없음. 대장균, 장염비브리오, 적리균, 노로바이러스, 패독 등 검사필요
  - 수산물의 수입에 있어 수입금지지역 지정사항은 없음. 단, 콜레라 오염지역

- 또는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의 수산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사대상임
- 굴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패독, 세균, 바이러스 등이 있는데, 구토와 설사증상을 일으키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노로바이러스(SRSV/소형구형바이러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함

#### ■ 수입바이어 견해

- 안전한 생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가공과정에서 위생적인 물을 사용하여 세척하고 살균된 해수로 일정기간 축양하는 등 일반적인 제품의 관리가 중요함
- 굴 산지에서는 독자적으로 ‘적정양식지침’이나 ‘노로바이러스대책지침’ 등을 정하여 정부와 생산자가 연대한 안정성확보가 중요함. 생산자와 어협 등은 출하되는 양식 굴에 대해 정기적인 자주검사를 실시하고 노로바이러스의 보유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수입된 생굴은 중간업자(중매인, 가공포장업자)와 도매업자에게 판매되어 소포장한 후 전국의 시장과 소매업자 등에게 유통됨
- 생굴은 10kg 발포합성수지상자에 얼음물을 넣어 수입·유통되며 냉동 굴은 IQF동결(급속벌크동결)의 10kg 골판지 상자에 넣어 수입·유통됨. 상자 겉에는 품명, 원산국명, 내용량, 수입업자 등이 표시됨
- 일본의 최대산지인 히로시마현에서 생산되는 굴은 90% 이상이 가열조리용으로 소비되며 약 10% 만이 생식용 굴로 소비됨. 보통 생식용으로 출하·판매하지만 실제로는 2~3% 만이 생식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가열조리하여 섭취함
- 생식용과 가열조리용에 대한 해역구분 기준은 해주 중 대장균군 수가 70MPN/100ml 이하인 것을 생식용 출하기준으로 정함. 세균조사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실시함
- 히로시마현에서는 안전한 굴 공급을 위해 패독 및 플랑크톤 조사를 수시로 실시함
  - 7개 해역 (11개소 조사지점)으로 나누어 관리



- 현과 협회에서 10월~이듬해 5월 까지 검사 (2주마다)
- 2~4(mouse unit)사이에는 매일검사 (협회에서 조사함)
- 4MU이하로 확인되는 것만 출하, 4MU이상이면 출하중지
- 주산지인 미야기현이 지진피해로 굴 가공공장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 한국산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운송관련 정보

- 한국산은 일본의 4개 항구와 1개의 공항에서 수입되며 시모노세키 항으로의 수입이 47%로 가장 많음. 이어서 하카타 항이 33%, 마츠야마 항이 12.2%, 오사카 항이 7.7%를 차지하며 항공편의 수입은 후쿠오카공항으로 1,500kg이 들어옴
- 타국산은 대부분 나리타공항을 이용한 항공편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카와사키 항과 하카타 항, 호주는 동경 항을 이용한 해상컨테이너로 수입됨

<2010년 한국산 굴 운송형태 및 세관별 수입동향>

	운송형태	물량(kg)	금액(천엔)	세관별 물량점유율
<b>수입 합계</b>		<b>4,200,533</b>	<b>2,476,184</b>	
<b>한국</b>		<b>3,979,268</b>	<b>2,292,419</b>	100%
마츠야마(松山)	해상컨테이너	486,510	276,932	12.2%
오사카(大阪)	해상컨테이너	304,991	182,087	7.7%
하카타(博多)	해상컨테이너	1,314,512	737,640	33.0%
후쿠오카 공항(福岡空港)	항 공	1,500	1,446	0.03%
<b>시모노세키(下関)</b>	해상컨테이너	<b>1,871,755</b>	<b>1,094,314</b>	<b>47.0%</b>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 굴의 수입동향

- 냉동굴도 포함한 '10년 굴 전체 수입물량은 4,201톤 이며 수입금액은 24억 7천 6백만 엔으로 이중에서 한국산이 전체 수입물량의 94.7%와 수입금의 92.6%를 차지함

- 한국이외 뉴질랜드, 호주, 중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대만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굴 수입동향>

(단위: 톤, 백만 엔)

	물량				금액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전 체	3,685	2,900	4,201	44.9	1,977	1,574	2,476	57.3
한 국	3,408	2,712	3,979	46.7	1,722	1,424	2,292	61.0
중 국	81.2	74.8	65.2	△12.8	33.6	29.7	24.1	△18.9
대 만	-	-	1.2		-	-	0.5	
아일랜드	6.3	4.2	2.1	△50.0	5.7	3.6	1.6	△55.5
캐 나 다	-	0.4	1.7	325.0	-	0.5	2.0	300.0
미 국	26.0	30.1	17.1	△43.2	31.9	30.0	18.5	△38.3
호 주	69.2	26.1	62.4	139.0	70.3	25.7	58.2	126.5
뉴질랜드	94.0	52.4	71.7	36.8	113.2	61.2	78.8	28.8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주: 현재 생굴의 수입 개별코드가 없으며 상기데이터는 냉동 굴도 포함됨

- 동일본지진의 영향으로 주산지인 이와테 산, 미야기현 산이 격감하고 히로시마 산의 생육이 늦어져 가격이 오르고 있음. 이로인해 일본산이 품귀를 보여 슈퍼에서는 예전에 없었던 한국산이 많이 진열되고 있음
- 츠키지시장에서의 미에현 산 15g 전후인 중간 알 사이즈가 1kg에 1,600~2,000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30% 상승함. 이와테 산은 60% 상승한 2,500~2,700엔이며 한국산은 상대거래가 주체로 800~1,000을 보이고 있음. 동경도내의 슈퍼에서는 한국산이 주역으로 가열용 굴 120g이 300~400엔으로 전년의 일본산 가격대를 나타냄

- 목적

- 조건부 지정해역에서 수급한 굴을 생식용으로 하기위한 정화법 및 정화설비의 인정절차를 정하고 적정한 정화를 보급
- 굴의 위생적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조건부지정해역

- (별표 1), 해역의 범위는 적당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함

- 해수의 처리설비

- 해수는 상시 급수 할 수 있는 것. 단, 간조 시 등에 해수의 취급이 불가능한 장소는 살균하면서 순환 할 수 있는 것
- 필요에 의해 망기(網器) 및 능력에 맞는 과기(過機)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
- 염소 살균기 또는 자외선 살균기 등 해수에 살균설비가 있는 것
  - (a) 염소 살균기의 경우 필요에 맞게 급수량 및 수질의 변동에 대해 필요량의 염소농도가 확보되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
  - (b) 자외선 살균기의 경우 사용시간의 적산계 및 살균능력이 저하될 때에 경보 벨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
- 우물을 사용할 때는 별표2의 기준에 합치되는 것으로 된 것
- 정화수조의 급수관에는 적산유량계가 있는 것

- 정화시설 (세정기, 정화수조, 정화용 바구니)

- 각부 굴의 세정
  - (a) 세정기는 흡수량이 풍부하고 오니 등이 충분히 제거 가능한 구조인 것
  - (b) 필요에 따라 해수의 살균설비가 있는 것
- 정화수조
  - (a) 수조의 기초는 튼튼한 것
  - (b) 콘크리트, 합성수지 또는 금속 등 내수성의 구조이고 표면이 평평하고 단단하며 비부식성인 것으로 모서리는 굴곡진 것
  - (c) 수조내의 급배수는 상하 혹은 수평으로 흐르는 구조로 환수율 또는 순환율이 높은 것으로 된 것

- 정화바구니
  - (a) 정화바구니의 깊이는 30cm 이하로 된 것
  - (b) 정화바구니에는 약 10cm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
- 정화관리
  - 해수의 처리설비
    - (a) 망기는 간조 시 등에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채수관내부에 부착된 치패 등을 제거하여 양수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b) 과기는 정기적 역세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재료 교환을 할 것
    - (c) 염소살균의 경우 정기적으로 유리염소농도를 측정해서 적절한 농도를 유지할 것
    - (d) 자외선살균의 경우 사용시간을 기록하고 내용시간을 경과했을 때나 살균능력이 저하될 때, 살균 등을 교환할 것
    - (e) 유량계에 의해 시간당 환수량을 파악하고 급수량 변동에 대응할 것
  - 정화시설
    - (a) 정화수조는 정화 전에 충분히 세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농도에 염소살균해수로 세정할 것
    - (b) 세정 후, 파손된 굴과 관등의 헐잡물을 충분히 제거할 것
    - (c) 세정에 사용할 해수를 염소살균의 경우 0.1~0.3ppm 정도가 적당함
    - (d) 정화수조 내의 바구니를 설치할 경우 바구니와 수면, 바구니 및 상면(床面)과의 사이는 약 10cm의 간격을 유지하고 굴과 해수의 접촉면적이 크게 되도록 고안할 것
    - (e) 환수량 또는 순환수량은 가능한 풍부하게 유지하여 최하 12L 이상/분, 굴 1,000개체를 확보할 것
    - (f) 정화시간은 물을 채운 후에 대략 20시간 정도 확보하고 정화가 충분히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시간으로 연장할 것
  - 기록
    - (a) 정화시설의 운전관리 상황은 정부 기록양식 1에 의해 기록하지 않으면 안됨
- 정화효과의 판정
  - 신규인정의 경우 : 해수의 처리설비, 정화설비 및 정화관리는 전술의 기분에 맞도록 하고 세균학적으로도 다음의 조건에 부합될 것

- (a) 조사결과 정화사용수의 coliform 1.8MPN/100ml 이하일 것
- (b) 정화 후의 굴의 E.coli MPN 및 SPC가 어느 것도 생식용굴의 성분규격에 부합되고 또한 정화 전의 굴의 검사결과와 비교 시 어느 것도 대략 10<sup>2</sup>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함

• 갱신인증의 경우

- (a) 해수의 처리설비 등이 신규인증 시와 동등할 것
- (b) 검사결과 정화 후의 굴의 E.coli MPN 및 SPC가 어느 것도 생식용굴의 성분규격에 부합될 것
- (c) 전년도의 운전관리 기록을 사용할 것

- 검사방법

• 검체의 채취

	해수	굴
신규인증의 경우	정화사용수를 1검체 채취할 것	정화로 사용하고자 올린 해역의 양식 뗏목 최상부에서 7검체분 채취할 것, 혹은 임의해역에서부터 7검체분을 채취하고 작업장 주변에 하루 낮밤 수하(垂下)한 후 이것을 검체로 할 것
갱신인증의 경우	정화로 사용하고자 올린 해역의	양식뗏목의 최상부의 그로부터 2검체분을 채취

• 검체량

- (a) 해수는 1검체 약 200ml로 할 것
- (b) 굴은 1검체 약 20개로 할 것

• 검체의 설치

신규인증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뗏목에서 채취한 7검체의 굴 안에, 5검체 각각 밀감봉지 등의 망대에 넣고, 정화수조 중의 바구니내의 설치하고 남은 2검체는 대조로 해서, 정화 전에 굴로 해서 그대로 검체로 사용할 것</li> <li>• 검체를 바구니 내에 설치할 때는 해수와의 접촉율이 가장 낮다고 생각 되어지는 바구니를 중앙부 부근에 설치할 것</li> <li>• 검체를 설치한 바구니는 정화수조 내에서 평균적인 정화율로 간주되는 중앙부근 및 가장 환수율 또는 순환율이 낮다고 생각되어 지는 위치에 설치할 것</li> </ul>
갱신인증의 경우	신규인증시에 설치할 위치(평균적인 정화율로 간주되는 중앙부근은 버린다)의 가운데에서부터 검사기간을 표시하는 위치(2개소) 에 설치할 것

• 검사항목

- (a) 해수에 있어서는 coliform MPN, 굴에 있어서는 E.coli MPN 및 SPC로 할 것

• 검사회수

(a) 검사는 2회 이상으로 해서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 검사기관

(a) 보건소, 보건환경센터, 위생연구소 또는 등록검사기관에서 행함

- 인공정화시설의 인증

• 인공정화시설의 설치계

신규인정의 경우	인공정화시설로 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양식2에 의해 소환보건소장의 인공정화시설 설치계를 (신규)을 하지 않으면 안 됨
갱신인정의 경우	인공정화시설로 해서 수속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양식 2에 의해 소환보건소장에 인공정화시설절치계(갱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됨

\* 계출(어떠한 일을 관청에 신고함)시에는 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것

• 심사

(a) 계출을 받은 보건소는 적정한 인공정화가 가능한 시설인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현식품위생실(히로시마시(広島市) 및 구례시(呉市)에 있어서는 해당 시(이하 해당시라고 함) 경우) 현(県)식품위생실에 송부할 것

(b) 현(県)식품위생실(해당 시)은 필요에 대해 현지 검사를 하고, 의견을 소환보건소에 보고할 것

(c) 현(県)식품위생실과 해당시는 필요에 따라 협의한다.

• 인정

(a) 심사하고 협의한 결과, 당해시설이 충분히 인공정화가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계출자에 취지를 통보하고 대장을 만들 것

(b) 인정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음

(c) 보건소는 인정 후 검사결과 또는 그 요령에 정해져 있는 것이 실시되지 않는 등 충분히 인공정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통지하고 대장에서부터 말소할 것. 이 경우 현(県)식품위생실(해당 시)은 필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현(県)식품위생실과 해당 시는 필요에 따라 협의할 것

(d) 인정기간은 해당 시준으로 할 것

### (3) 활 전복

#### ■ 관세정보

- HS코드
  - 0307.91-450 (활 전복 수입 시 적용되는 코드)
- 관세율

기본	WTO협정 (한국)	특별특혜 (LDC)	경제연계협정(EPA)		
			멕시코	아세안	필리핀
10%	7%	무관세	무관세	6.3%	2.3%

자료: 일본관세협회

#### ■ 통관 시 주의사항

-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 품목

품 명		일본의 HS code	품 명		일본의 HS code
<b>바지락</b>	<b>활, 신선, 냉장</b>	<b>0307.81-480</b>	피조개	활	0307.91-420
성게	신선, 냉장	0307.91-430	<b>전복</b>	<b>활, 신선, 냉장</b>	<b>0307.91-450</b>
	활	0307.91-110		<b>냉동</b>	<b>0307.99-142</b>
	냉동	0307.99-131	새우	활	0306.23-110
	건조, 염장, 염수장	0307.99-231		냉동	0306.13-000
재첩	활, 신선, 냉장	0307.91-470	낙지	냉동	0307.59-100
대게	대게	0306.34-121	대합	활, 신선, 냉장	0307.91-410
	붉은대게	0306.34-139	성게·해삼의 조제품		1605.30-220
	냉동	0306.14-020	<b>넙치</b>		<b>0301.99-220</b>
털게	활, 신선, 냉장	0306.24-140			
	냉동	0306.14-040			

※ 품명기준으로 12개 품목임

- 활 전복 수출과정
  - 주로 완도에서 시모노세키 직항편을 이용. 일부 부산 경유
  - 배 적재량은 18톤 정도로 오사카, 동경 등에 공급
  - 완도(09:00) → 시모노세키(익일 08:00), 태경해운 주1회, 화요일 운항

- 차량 내에 수조가 5개 설치되어 수조 1개당 400kg 적재 (10kg 전복상자 40개)
- 품질유지를 위해 수조는 순환여과 쿨러(cooler)를 설치
- 수조차량은 박테리아, 불순물 제거로 여과방식을 활용하고 수온은 13.5℃ 유지 (자외선 살균기는 사용안함)
- 트럭(20톤)운송 : 시모노세키에서 동경은 12시간, 오사카는 5시간 소요

#### ■ 수입바이어 견해

- 일본 내 전복은 가정에 보급되기보다 대부분 외식업체에 유통됨
- 일본에서 70~90g정도의 전복은 주로 구이나 조림용으로 사용되며 110~150g은 초밥, 횡감, 건조용으로 사용됨. 250g이상의 대형전복은 선물용 가공품 또는 스테이크용으로 활용됨
- 전복가격은 크기별로 다르지만 일본산 전복의 경우 kg당 약 7,000엔 수준으로 거래되며 한국산은 4,000~5,000엔 호주산은 4,500~6,000엔 수준임
- 전복은 여름철(6~8월), 연말연시(12월)에 수요가 많음
- 현지 수입업체 대부분은 자체수조를 보유하고 있어 온천여관, 호텔, 외식 등으로 공급하기 전에 수조에서 일시적으로 비축하고 있음. 비축기간은 길어도 3~10일 이내
- 최근 엔화환율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대일 전복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지진피해로 주산지인 양식장이 당분간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산 수입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 운송관련 정보

- 한국산은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한 시모노세키 항으로의 수입이 93.0%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국가는 대부분 항공편을 이용하여 나리타공항으로 수입함



<2010년 한국산 활 전복 운송형태 및 세관별 수입동향>

(단위: kg, 천 엔)

	운송형태	물량	금액	세관별 물량점유율
<b>수입 합계</b>		<b>1,294,288</b>	<b>4,095,645</b>	
<b>한국</b>		<b>1,040,085</b>	<b>3,294,862</b>	100%
하네다(羽田)	항 공	1,440	4,647	0.1%
나리타(成田)	항 공	17,598	72,916	1.7%
오사카(大阪)	해상컨테이너	9,475	31,296	0.9%
칸사이공항(関西空港)	항 공	1,200	3,829	0.1%
모지(門司)	해상컨테이너	2,238	6,539	0.2%
하카타(博多)	해상컨테이너	38,935	134,421	3.7%
<b>시모노세키(下関)</b>	<b>해상컨테이너</b>	<b>967,338</b>	<b>3,035,258</b>	<b>93.0%</b>
치토세	항 공	1,861	5,956	0.2%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2010년 타국 산 활 전복 운송형태 및 세관별 수입동향>

(단위: kg, 천 엔)

국가	운송형태	물량	금액	세관별 물량점유율
<b>중국</b>		47,655	116,130	
나리타	항 공	37,464	94,422	78.6%
칸사이공항	항 공	8,212	17,642	17.2%
후쿠오카공항	항 공	1,660	2,957	
시모노세키	해상컨테이너	219	757	
치토세	항 공	100	352	
<b>대만</b>		20,997	26,466	
나리타	항 공	18,146	21,114	86.4%
칸사이공항	항 공	2,851	5,352	13.6%
<b>미국</b>		36,431	81,407	
나리타	항 공	36,431	81,407	100%
칠레		949	3,037	
나리타	항 공	949	3,037	100%
<b>남아프리카공화국</b>		26,387	87,055	
나리타	항 공	22,936	75,601	86.9%
칸사이공항	항 공	3,451	11,454	13.1%
<b>호주</b>		121,784	486,688	
나리타	항 공	97,605	381,817	80.1%
칸사이공항	항 공	23,979	104,032	19.7%
중부공항	항 공	200	839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 일본내 전복 포장 및 배송

- 포장은 스티로폼 상자 안의 비닐봉지(2장)에 해수를 넣고 산소를 주입하여 고무줄로 밀봉한 후 테이핑 처리 (전복용기는 회수하여 한국으로 재송부)
- 필요시에 산소발생기를 부착하여 1~2일간 가동(건전지 수명)하여 신선도를 유지

<활 전복 포장작업>



비닐 포장



산소주입



산소발생기 부착

- 전복 하역 및 보관

- 수조차량에서 상자별로 경사도를 활용하여 하역(4명 작업)
- 보관수조 재질은 FRP(Fiber Reinforced Plastic : 유리강화섬유플라스틱) 사용
- 해수 보충은 천일염 등에 미네랄을 첨가한 인공해수와 수조차량의 해수, 또는 인근 바닷물을 사용하여 교체함

- 한국산 활 전복 수입 및 활어차 운행현황

- 한국 산 전복의 수입경로는 완도에서 시모노세키 직항 편을 이용 (일부 부산 경유)
  - 완도(09:00) → 시모노세키(08:00) : 태경해운, 주 1회, 화요일 운항
  - 부산(20:00) → 시모노세키(08:00) : 부관훼리, 매일운항
  - 부산(15:10) → 오사카(10:00) : PAN STAR, 주 3회, 화/목/일 운항

- 한일 간 활어차 운행상황

- 한국 활어차는 일본에서 운행제한으로 수입 항구에서 일본 활어차로 환적
- 1일 활어차 유입량
  - 오사카 항 : 2~5대

- 시모노세키 항 : 15~20대
- 활어차 평균 적재량은 약 2.5톤 (5톤 차량 기준)
- 한일 간 주요 수출입품목
  - 한국 : 넙치, 전복, 복어
  - 일본 : 멧게, 가리비, 명태, 돌돔
- 한국특수차량(활어차량) 카페리를 이용한 운송 시 구비서류 및 절차 (※ 활 넙치와 동일)
- 한국특수차량(활어차량)의 물류흐름도 (※ 활 넙치와 동일)
- 일본특수차량 카페리를 이용한 운송 시 구비서류 및 절차 (※ 활 넙치와 동일)
- 일본특수차량의 물류흐름도 (※ 활 넙치와 동일)

■ 활 전복의 수입동향

- '10년 활 전복 수입은 한국으로부터 수입량은 1,040톤 수입액은 32억 9천 5백만 엔으로 전체수입의 80.4%를 차지함
- 한국 이외 6개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량은 호주(9.4%), 중국(3.75%), 미국(2.8%), 남아프리카공화국(2.0%), 대만(1.6%), 칠레(0.07%)의 순임

<활 전복 수입동향>

(단위: 톤, 백만 엔)

	물량				금액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전 체	940	1,251	1,294	3.4	3,507	4,024	4,096	1.8
한 국	632	1,008	1,040	3.2	2,188	3,209	3,295	2.7
중 국	11.8	8.9	47.7	436.0	38.9	17.5	116.1	563.4
대 만	6.7	8.5	21.0	147.1	17.4	13.2	26.5	100.8
미 국	69.5	63.9	36.4	△43.0	277.7	192.5	81.4	△57.7
칠 레	9.0	3.8	0.9	△76.3	35.5	11.5	3.0	△73.9
남아프리카 공화국	60.1	32.4	26.4	△18.5	246.3	112.2	87.1	△22.4
호 주	10.6	126.3	121.8	△3.6	703.1	468.0	486.7	4.0

#### (4) 냉동전복

##### ■ 관세정보

- HS코드
  - 0307.99-142 (냉동전복 수입 시 적용되는 코드)
- 관세율

기본	WTO협정 (한국)	특별특혜 (LDC)	경제연계협정(EPA)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 시아	태국	브루나이	아세안	필리핀	베트남
10%	7%	무관세	26%	무관세	1.8%	2.6%	3.5%	6.3%	2.3%	5.1%

자료: 일본관세협회

##### ■ 통관 시 주의사항

-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 품목임

##### ■ 수입바이어 견해

- 한국산 냉동전복은 전체수입의 2~3%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므로 수요처발굴로 수출확대모색이 필요함
- 최근 엔화환율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대일 전복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지진피해로 주산지인 이와테현 등의 양식장이 당분간 가동이 어려워 한국산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 운송관련 정보

- 한국산은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한 시모노세키 항으로의 수입이 68.1%로 가장 많음
- 호주, 칠레, 중국 등 대부분은 동경 항구로 수입됨

<2010년 한국산 냉동전복 운송형태 및 세관별 수입동향>

(단위: kg, 천 엔)

	운송형태	물량	금액	세관별 물량점유율
<b>수입 합계</b>		<b>559,750</b>	<b>1,699,865</b>	
<b>한국</b>		<b>15,406</b>	<b>57,049</b>	100%
동경(東京)	해상컨테이너	4,531	21,708	29.4%
요코스카(横須賀)	해상컨테이너	389	1,110	2.5%
<b>시모노세키(下関)</b>	<b>해상컨테이너</b>	<b>10,486</b>	<b>34,231</b>	<b>68.1%</b>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2010년 타국산 냉동전복 운송형태 및 세관별 수입동향>

(단위: kg, 천 엔)

	운송형태	물량	금액	세관별 물량점유율
<b>중국</b>		123,348	220,567	
동경	해상컨테이너	84,520	136,538	68.5%
나리타	항 공	347	2,102	
고베	해상컨테이너	12,571	36,944	
모지	해상컨테이너	9,910	16,177	
하카타	해상컨테이너	16,000	28,806	13.0%
<b>칠레</b>		232,320	653,410	
동경	해상컨테이너	228,767	622,253	98.5%
나리타	항 공	3,500	30,718	
고베	해상컨테이너	53	439	
<b>호주</b>		172,080	735,197	
동경	해상컨테이너	152,261	525,946	88.5%
나리타	항 공	2,499	12,315	
고베	해상컨테이너	14,870	169,816	8.6%
칸사이공항	항 공	1,970	13,557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 냉동전복의 수입동향

- '10년 냉동전복의 전체수입은 수입량이 560톤, 수입액은 17억 엔으로 이중 한국산은 전체수입량의 2.8%(15.4톤)과 전체수입금액의 3.4%(5천 7백만 엔)로 나타남
- 냉동전복은 8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금액으로 보면 호주가 전체의 44.3%, 칠레가 38.4%, 중국이 13.0%를 차지하며 3개국이 95.7%를 차지함

<냉동전복 수입동향>

(단위: 톤, 백만 엔)

	물량				금액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전 체	342	431	560	29.9	1,348	1,390	1,700	22.3
한 국	0.5	5.4	15.4	185.2	1.8	19.2	57.0	196.9
중 국	7.1	59.4	123.3	107.6	45.8	144.4	220.6	52.8
대 만	-	0.9	1.0	11.1	-	2.7	1.5	△44.4
베 트 남	-	-	2.7		-	-	2.1	
말레이시아	-	0.3	0.9	200.0	-	0.4	1.2	200.0
아이슬란드	-	4.1	-		-	1.1	-	
프 랑 스	0.2	0.2	-		1.6	1.6	-	0.0
미 국	-	0.06	-		-	0.6	-	
칠 레	133.5	185.1	232.3	25.5	315.8	429.5	653.4	52.1
남아프리카 공화국	-	7.3	12.0	64.4	-	18.3	28.8	57.4
호 주	200.2	168.2	172.1	2.3	979.7	772.0	735.2	△4.8
뉴질랜드	0.7	-	-		3.5	-	-	

(5) 냉동 홍게살

■ 관세정보

● HS코드

- 1605.10-029 (냉동 홍게대살 수입 시 적용되는 코드)

● 관세율

기본	WTO협정 (한국)	특혜 GSP	특별특혜 (LDC)	경제연계협정(EPA)				
				멕시코	태국	아세안	필리핀	베트남
9.6%	9.6%	7.2%	무관세	무관세	1.2%	7.9%	2.4%	3.6%

자료: 일본관세협회

■ 통관 시 주의사항: 공통사항 참조

■ 수입바이어 견해

- 일본 도매시장으로 유통되거나 주로 의식업체 등 가공업체로 유통되고 있음

■ 운송관련 정보

- 한국산은 9개의 항구로 수입되고 있으며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 항으로 수입이 45.4%로 가장 많고 돗토리현의 사카이 항이 21.2%, 아오모리현의 하티노헤 항이 12.2%로 나타남
- 중국산은 동경 항으로 55.1%가 수입됨
- 운송형태는 해상컨테이너만을 이용하여 수입되고 있음

<2010년 냉동 홍게대살 세관별 수입동향>

(단위: kg, 천 엔)

	운송형태	물량	금액	물량 점유율
<b>수입 합계</b>		13,245,170	18,167,244	
<b>한국</b>		<b>3,547,692</b>	<b>3,079,057</b>	
사카이(境)	해상컨테이너	752,767	709,584	21.2%
시모노세키(下関)	해상컨테이너	<b>1,612,304</b>	<b>1,425,636</b>	<b>45.4%</b>
하치노헤(八戸)	해상컨테이너	432,668	301,817	12.2%
<b>중국</b>		8,382,625	13,158,483	
동경	해상컨테이너	4,621,751	7,200,606	55.1%
가와사키	해상컨테이너	1,082,185	1,596,610	12.9%
사카이	해상컨테이너	750,320	1,142,596	8.9%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 냉동 홍게대살의 수입동향

- 14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함. 중국산이 8,383톤으로 전체의 63.3%로 수입물량이 가장 많음
- 한국산은 2위로 수입량은 3,584톤으로 26.8%를 차지하며 수입금액은 30억 79백만 엔 임

<냉동 홍게살 수입동향>

(단위: 톤, 백만 엔)

	물량				금액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전 체	14,791	13,851	13,245	△4.4	25,369	21,506	18,167	△15.5
한 국	3,489	3,324	3,548	6.7	3,616	3,132	3,079	△1.7
중 국	10,066	9,057	8,383	△7.4	19,646	15,975	13,158	△17.6
홍 콩	1.3	0.06	0.5	733.3	6.6	0.4	2.7	575.0
베트남	571	826	533	△35.4	1,114	1,453	822	△43.4
태 국	195	258	266	3.1	358	446	384	△13.9
싱가폴	-	0.5	0.5	0	-	0.49	0.5	2.0
인도네시아	43.6	67.6	251	271.3	37.7	101	366	262.4
노르웨이	16.4	24.1	20	△17.0	10.1	9.3	9.6	3.2
아일랜드	9	-	9		3.5	-	3.4	
러시아	97.8	92.8	132	42.2	205	248	277	11.7
캐나다	115	27.1	14.8	△45.4	236	21.4	14.7	△31.3
미 국	-	14.5	2.7	△81.4	-	21.8	3.8	△82.6
칠 레	12.5	-	1.3		5.3	-	0.3	
우루과이	20	-	-		26.5	-	-	
나미비아	155	159	83.8	△47.3	103.5	97.8	45.3	△53.7

(6) 밀폐용기들이 홍게대살

■ 관세정보

● HS코드

- 1605.10-010 (밀폐용기들이 홍게살 수입 시 적용되는 코드)

● 관세율

기본	WTO협정 (한국)	특별특혜 (LDC)	경제연계협정(EPA)			
			멕시코	아세안	필리핀	베트남
6.5%	5%	무관세	무관세	5%	1.7%	2.5%

자료: 일본관세협회

■ 통관 시 주의사항 (\*별첨자료 참조)



■ 수입바이어 견해

- 한국산 수산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혼합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등 각 과정을 중점 관리하는 국제적 위생관리기준 HACCP 인증의 생산시설이 필요
- 한국산은 현재 냉동품만 수입되고 있음

■ 운송관련 정보

- 운송형태는 해상컨테이너만을 이용하며 주로 동경 항과 오사카 항으로 수입됨

<2010년 밀폐용기들이 홍게살 세관별 수입동향>

(단위: kg, 천 엔)

	운송형태	물량	금액	물량 점유율
<b>수입 합계</b>		<b>178,192</b>	<b>169,548</b>	
<b>중국</b>		<b>75,690</b>	<b>90,112</b>	
동경(東京)	해상컨테이너	68,357	81,420	90.3%
<b>태국</b>		<b>31,551</b>	<b>16,585</b>	
오사카(大阪)	해상컨테이너	30,411	15,668	96.4%
<b>인도네시아</b>		<b>65,920</b>	<b>45,644</b>	
오사카(大阪)	해상컨테이너	32,313	14,356	49.0%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 밀폐용기들이 홍게대살의 수입동향

- 7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산은 '08년에 소량 수입이후 현재 수입은 없음
- 주수입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3개국이 97.3%를 차지함

<밀폐용기들이 홍계살 수입동향>

(단위: 톤, 백만 엔)

	물량				금액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전 체	244	98	178	81.6	310	82	170	107.3
한 국	0.7	-	-		1.8	-	-	
중 국	132	6.2	75.7	1,121.0	210	21.1	90	326.5
베트남	7.5	-	-		13.4	-	-	
태 국	48.3	35.5	31.6	△11.0	23.8	20.2	16.6	△17.8
싱가포르	0.4	0.07	-		2.0	0.3	-	
필리핀	-	-	0.5		-	-	2.1	
인도네시아	37.5	55.5	65.9	18.7	40.8	38.9	45.6	17.2
프랑스	0.97	1.1	1.0	△9.1	1.8	1.6	1.1	△31.3
러시아	0.1	-	2.8		0.2	-	12.9	
캐나다	0.03	-	-		0.2	-	-	
칠 레	1.7	-	0.7		1.9	-	1.1	
호 주	14.8	-	-		15.6	-	-	

(7) 건조 김

■ 관세정보

● HS코드

- 1212.20-110 해초 (직사각형의 종이형태, 430cm<sup>2</sup>이하/매)
- 1212.20-120 해초 (1212.20-10 이외)

● 관세율

기본	관세번호
1.5엔 / 1매	1212.20-110
40%	1212.20-120

자료: 일본관세협회

■ 통관 시 주의사항

- 일본의 김 수입은 제한적으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음
  - 건조 김에 대한 수입할당제(IQ) 2011년 2월 8일 현재

해당품목	건조 김	
HS 번호	1212-20-1-(1), 1212-20-1-(2)	
수입할당량	전체	6억 79백만 장
	상사할당(한국)	1억 60백만 장
	상사할당(중국)	2억 88백만 장
	수요자할당	2억 26백만 장
	선착순할당	5백만 장

- 수입절차
  - 건조 김, 무당 조미김, 김 조제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자는 '11년도 수입발표에 EK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입할당을 신청함
  - 서면, 전자신청 절차 개요
    - 제출처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농수산실  
Tel. 03-3501-1151 (내선:3261)
    - 신청접수 기간등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import/wariate/suisanbutsuhappyo.htm](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import/wariate/suisanbutsuhappyo.htm)
- JAS법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동 법에 의거하여 판매 시 '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 및 '수산물 품질표시기준'에 따라서 일괄표시를 해야함. 이중 수입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사항으로 20개 식품군중 14번 항목에 건조 김, 구운 김, 기타 건조한 해조류가 포함됨
  - 의무 표시사항
    - 업소용이 아닌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용도의 경우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유효기간, 보존방법과 수입품의 경우 원산국명, 제조자(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등을 순서대로 표시해야함

- 명칭의 경우 이전에는 상품명 또는 품명으로 기재해도 무방했으나 현재 명칭(식품의 유형)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됨
- 원재료와 포장재질의 경우 실제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함유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도록 함
- 특히 2010년부터 식품위생법의 알레르기표기법에 의해 알레르기를 일으킨 성분이 포함된 원재료(조미김의 경우 건조 김에 새우, 게 등의 갑각류가 혼입 될 가능성이 있음)에 관해서 반드시 혼입 될 가능성이 있음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됨

● 조미김 수입 시 표시방법

표시사항		상세 설명
名称/ (명칭)	味付けのり / 조미김	JAS법에 따라 명칭(名称, 식품의유형)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됨
原材料名/ (원재료명)	乾のり(韓国産)、コーン油、食塩 / 건조 김(한국산), 옥수수수기름, 식염	함유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 원재료명에 원산지를 기재하였을 경우 별도로 원산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内容量/ (내용량)	板のり3.375枚分(8切9枚3P) / 전형김 3.375매분(8절 9매 3P)	한국 김 원초(재래김)의 경우 190mm x 270mm (1장/9절)기준, 1팩 당 9장이 들어간 경우 일본 김 원초 190*210mm(1장/8절)과 사이즈가 같다고 계산 즉, 9장/8절*3팩이 들어가서 일본김3.375장분의 김이 들어갔다는 것을 뜻함
賞味期限/ 유통기한	枠外右側及び個装袋に記載 우측 및 개포장에 기재	유통기한의 경우 기재 장소를 상세히 기재
保存方法/ 보존방법	直射日光・高温多湿を避け、なるべく冷 暗所に保存して下さい。	보존 방법을 표시
原産国/ 원산국	韓国 한국	원산지를 표시
輸入者/ 수입자	美味しいノリ株式会社 東京都新宿区大久保1-1-1 TEL: 03-3333-5555	수입자/판매자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
包材の材質 / 포장재질	外袋：PP(ポリプロピレン) 内袋：PP(ポリプロピレン), PE(ポリエチレン), PET(ペット)、 M(アルミ箔) トレー：PET(ペット)	내포장/외포장/용기에 관한 재질을 성분함유율에 따라 반드시 순서대로 기재 재활용마크는 반드시 지정된 마크를 사용

표시사항	상세 설명
<p>ご注意 / 주의</p> <p>※ 本製品で使用している乾のりは、甲殻類(えび・かに等)が混ざる養殖法で採取しております。 /</p> <p>※ 本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조김은 갑각류(새우, 게 등)이 섞이는 양식법으로 채취됨</p>	<p>알레르기표기법에 의해 2010년부터 새우, 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원재료의 경우, 반드시 혼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p>
<p>※ 乾燥剤入り / 방습제 유무</p>	<p>방습제가 들어간 경우 반드시 표시한다.</p>
<p>※ お客様サービス係</p>	<p>소비자 서비스를 위한 연락처 등을 표시</p>

● 주의사항 및 세법 위반 시 제재조치

- 현품의 수량과 금액이 송장의 수량과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현품의 수량과 금액이 수입수량과 금액으로 환산되며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 이를 위반하여 통관하는 경우 외환 및 외국무역법위반으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을 받는 것 이외에 행정제재(1년 이내 수입금지)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함

● 김 라벨링 표시 예

· 품명	: 전형 구운김 블루
· 명칭	: 구운 김
· 원재료명	: 마른 김(치바현산)
· 내용량	: 전형 10장 입
· 상미기한	: 하기에 기재
· 보존방법	: 고온다습한 곳을 피하고 개봉 후에는 냉장보관
· 제조자	: (주) 마고코로 잇큐야
· 주소	: 치바현 핫즈시 가와나 1481-2
· 영양성분표	: 전형 10장(30g) 당
에너지	: 56.40kcal
단백질	: 12.42g
지질	: 1.11g
탄수화물	: 13.29g
나트륨	: 159mg
비타민B12	: 17µl



● 라벨링 규정 위반 시

- 품질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JAS법 제 19조 14 규정에 근거해 농림수산대신,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판매자등에 대해서 표시사항과 준수사항을 따를 것을 지시 (원칙적으로 지시했을 경우 공표) 하도록 함
-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농림수산대신이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을 명령 함. 그 명령을 위반했을 시 개인에 대해서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법인에 대해서는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수입바이어 견해

- 최근 엔화환율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대알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한류 붐의 영향으로 한국 조미김 은 계속하여 판매호조를 보임
- 중국산의 수입은 품질 면에서 일본소비자들이 꺼려하고 있어 앞으로도 정체 될 전망이다

■ 운송관련 정보

- 한국산은 7개 항구로부터 수입되며 동경 항으로 수입물량은 34.5%, 시모노세키 항은 33.6%로 이 2개 항으로 수입이 68.1% 임. 운송은 모두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함

<2010년 건조 김 세관별 수입동향>

(단위: kg, 천 엔)

	운송형태	물량	금액	물량 점유율
<b>수입 합계</b>		<b>540,686</b>	<b>900,634</b>	
<b>한국</b>		<b>420,054</b>	<b>749,081</b>	<b>100%</b>
동경(東京)	해상컨테이너	144,927	264,079	34.5%
시모노세키(下関)	해상컨테이너	141,004	228,519	33.6%
<b>중국</b>		<b>120,632</b>	<b>151,553</b>	<b>100%</b>
미이케	해상컨테이너	72,524	89,739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 건조 김의 수입동향

- 한국과 중국에서만 수입되며 한국산 수입량은 420톤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하며 수입금액은 7억 4천 9백만 엔임

<건조 김 수입동향>

(단위: 톤, 백만 엔)

	물량				금액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b>전 체</b>	<b>244</b>	<b>98</b>	<b>178</b>	<b>81.6</b>	<b>310</b>	<b>82</b>	<b>170</b>	<b>107.3</b>
<b>한 국</b>	<b>0.7</b>	<b>-</b>	<b>-</b>		<b>1.8</b>	<b>-</b>	<b>-</b>	
<b>중 국</b>	132	6.2	75.7	1,121.0	210	21.1	90	326.5

(8) 조미 김

■ 관세정보

- HS코드
  - 2106.90-298 기타해초 (무당, 기타)
- 관세율

기본	WTO협정 (한국)
25%	17.5%

자료: 일본관세협회

■ 통관 시 주의사항

- 무당 조미김에 대한 수입할당제(IQ) 2011년 2월 8일 현재

해당품목	무당 조미김	
HS 번호	2106-90-(2)-E-(b)	
수입할당량	전체	5억 3백만 장
	상사할당(한국)	3억 2백만 장
	수요자할당	1억 94백만 장
	선착순할당	7백만 장

- 김 조제품(무당 조미김 제외) 대한 수입할당제(IQ) 2011년 2월 8일 현재

해당품목	김 조제품 (구운김 포함, 무당 조미김 제외)	
HS 번호		
수입할당량	전체	1억 81백만 장
	상사할당(한국)	29백만 장
	상사할당(한국 이외)	84백만 장
	수요자할당	65백만 장
	선착순할당	3백만 장

● 수입절차

- 건조 김, 무당 조미김, 김 조제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자는 '11년도 수입발표에 EK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입할당을 신청함

- 서면, 전자신청 절차 개요

· 제출처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농수산실  
Tel. 03-3501-1151 (내선:3261)

· 신청접수 기간등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import/wariate/suisanbutsuhappyo.htm](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import/wariate/suisanbutsuhappyo.htm)

● JAS법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동 법에 의거하여 판매 시 '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 및 '수산물 품질표시기준'에 따라서 일괄표시를 해야함. 이중 수입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



사항으로 20개 식품군중 14번 항목에 건조 김, 구운 김, 기타 건조한 해조류가 포함됨

- 의무 표시사항

- 업소용이 아닌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용도의 경우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유효기간, 보존방법과 수입품의 경우 원산국명, 제조자(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등을 순서대로 표시해야함
- 명칭의 경우 이전에는 상품명 또는 품명으로 기재해도 무방했으나 현재 명칭(식품의 유형)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됨
- 원재료와 포장재질의 경우 실제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함유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도록 함
- 특히 2010년부터 식품위생법의 알레르기표기법에 의해 알레르기를 일으킨 성분이 포함된 원재료(조미김의 경우 건조 김에 새우, 게 등의 갑각류가 혼입 될 가능성이 있음)에 관해서 반드시 혼입 될 가능성이 있음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됨

● 조미김 표시사항 위반사례

- ‘조미김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제 7조 4항 부당표시 금지’에 의해 자주 적발되는 표시 위반 사례로 상품명에 ‘돌김’ 으로 기재하여 마치 해당 식품의 원재료가 암초 등에서 자생하는 돌김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
- 실제로는 해당 상품의 원재료로 돌김이 사용되지 않고 양식 김이 사용된 경우, 돌김이라고 표시하여서는 안 됨

■ 수입바이어 견해

- 최근 엔화환율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대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한류 붐의 영향으로 한국 조미김 은 계속하여 판매호조를 보임

■ 운송관련 정보

- 한국산은 21개 항구로부터 수입되며 동경 향으로 수입물량은 59.9%로 가장 많음. 운송은 모두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함

<2010년 조미 김 세관별 수입동향>

(단위: kg, 천 엔)

	운송형태	물량	금액	물량 점유율
<b>수입 합계</b>		<b>1,270,900</b>	<b>2,322,112</b>	
<b>한국</b>		<b>826,326</b>	<b>2,073,712</b>	<b>100%</b>
동경(東京)	해상컨테이너	495,082	1,104,179	59.5%
시모노세키(下関)	해상컨테이너	124,858	477,409	15.1%
<b>중국</b>		204,574	118,803	100%
동경(東京)	해상컨테이너	144,776	78,485	70.8%
<b>베트남</b>		240,000	129,597	100%
지바	해상컨테이너	240,000	129,597	100%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 조미 김의 수입동향

- '10년 조미 김의 전체수입량은 1,271톤이며 수입금액은 23억 22백만 엔임
- 이중에서 한국산 수입량은 826톤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함. 이어서 중국이 16.1% 베트남이 18.9%를 차지함

<조미 김 수입동향>

(단위: 톤, 백만 엔)

	물량				금액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기타의 식용해초 조제품	900	1,035	1,271	22.8	1,558	1,894	2,322	22.6
한 국	425	591	826	39.7	1,300	1,675	2,074	23.8
베트남	331	241	240	△0.4	160	105	130	23.8
중 국	144	203	205	0.9	98	115	119	3.5

## (9) 건 미역

### ■ 관세정보

- HS코드
  - 1212.20-133 (건조 미역 수입 시 적용되는 코드)
- 관세율

기본	WTO협정 (한국)
15%	10.5%

자료: 일본관세협회

### ■ 통관 시 주의사항 (\*별첨자료 참조)

### ■ 수입바이어 견해

-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사고로 고급미역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해 한국산 수입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 운송관련 정보

- 한국산은 12개 항구로부터 수입되며 시모노세키 항으로 수입물량은 72.5%로 가장 많음. 운송은 모두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함
- 중국산은 일본의 28개 항구와 공항을 이용하여 수입되며 이중 동경, 모지, 고베 항으로의 수입이 54.2%를 차지함

### <2010년 건 미역 세관별 수입동향>

(단위: kg, 천 엔)

	운송형태	물량	금액	물량 점유율
<b>수입합계</b>		<b>8,940,359</b>	<b>5,015,460</b>	
<b>한국</b>		<b>820,020</b>	<b>696,029</b>	<b>100%</b>
사카이(境) 돗토리현	해상컨테이너	119,924	104,718	14.6%
시모노세키(下関)	해상컨테이너	594,480	496,120	72.5%

	운송형태	물량	금액	물량 점유율
중국		8,120,291	4,319,215	100%
동경	해상컨테이너	2,212,495	1,460,087	27.2%
모지	해상컨테이너	1,005,199	451,993	12.4%
고베	해상컨테이너	1,182,461	516,805	14.6%
칠레		48	216	100%
나리타	항 공	48	216	100%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 ■ 건 미역의 수입동향

- '10년 건 미역의 전체수입량은 8,940톤이며 전체수입금액은 50억 1천 5백만 엔  
입
- 이중에서 한국산 수입량은 820톤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며 수입액은 6억 9  
천 6백만엔
- 3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며 수입 제 1위국은 중국으로 전체물량의 90.8%를 차지  
함

#### <건 미역 수입동향>

(단위: 톤, 백만 엔)

	물량				금액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전 체	8,954	8,241	8,940	8.5	5,827	4,884	5,015	2.7
한 국	962	1,003	820	△18.2	961	821	696	△15.2
중 국	7,992	7,237	8,120	12.2	4,866	4,063	4,319	6.3
아일랜드	-	0.1	-		-	0.3	-	
칠 레	-	-	0.05		-	-	0.2	

### (10) 건 다시마

#### ■ 관세정보

- HS코드

- 1212.20-1339 (건 다시마 수입 시 적용되는 코드)

● 관세율

기본	WTO협정 (한국)
15%	10.5%

자료: 일본관세협회

■ 통관제도 및 주의사항

- 다시마 조제품에 대한 수입할당제(IQ) 2011년 6월 20일 현재

\* 동일본대지진 영향의 물량부족으로 2011.11.04 수입할당과는 별도로 추가 할당  
됨

해당품목	다시마(보일 후 염장한 것), 다시마조제품	
HS 번호	1212-20-1-(3), 2106-90-2-(2)-E	
수입할당량	전체	1,100톤
	수요자할당	935톤
	선착순할당	165톤
	(한국만적용)	

- 2011년 11월 4일 할당내용

해당품목	다시마(삶은 후 염장한 것), 다시마조제품	
HS 번호	1212-20-1-(3), 2106-90-2-(2)-E	
수입할당량	전체	600톤
	수요자할당	480톤
	선착순할당	120톤
	(한국만적용)	

- 다시마 조제품에 대한 수입할당제(IQ) 2011년 7월 29일 현재

해당품목	다시마	
HS 번호	1212-20-1-(3)	
수입할당량	전체	2,960톤
	수요자할당	2,810톤
	선착순할당	150톤
	(대 전세계)	

■ 수입바이어 견해

-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정부가 한국산에 대해 다시마의 수입할당을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임

■ 운송관련 정보

- 한국산은 8개 항구, 중국산은 17개 항구로 수입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
- 한국산은 고베 항이 54.9%로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30.3%의 시모노세키 항임

<2010년 건 다시마 세관별 수입동향>

(단위: kg, 천 엔)

	운송형태	물량	금액	물량 점유율
<b>수입 합계</b>		<b>3,009,362</b>	<b>1,729,430</b>	
<b>한국</b>		<b>555,349</b>	<b>304,059</b>	<b>100%</b>
고베(神戸)	해상컨테이너	304,640	180,509	54.9%
시모노세키(下関)	해상컨테이너	166,776	77,720	30.0%
<b>중국</b>		<b>2,146,447</b>	<b>1,138,395</b>	<b>100%</b>
고베	해상컨테이너	1,583,530	851,618	73.8%
<b>칠레</b>		<b>82,105</b>	<b>177,292</b>	<b>100%</b>
시모노세키	해상컨테이너	29,160	68,568	35.6%
<b>브라질</b>		<b>127,975</b>	<b>24,578</b>	<b>100%</b>
시모노세키	해상컨테이너	127,975	24,578	100%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 건 다시마 수입동향

- 건 다시마는 13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전체 수입물량은 3,009톤 이며 수입액은 17억 29백 만엔으로 나타남. 이중 물량 수입 1위국은 중국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하며 한국은 2위로 17.7%인 555톤으로 나타남

<건 다시마 수입동향>

(단위: 톤, 백만 엔)

	물량				금액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전 체	2,696	2,882	3,009	4.4	1,743	1,633	1,729	5.9
한 국	801	510	555	8.8	482	242	304	25.6
중 국	1,616	2,106	2,146	1.9	892	1,069	1,138	6.5
대 만	30.5	21.6	22.3	3.2	44.7	30.9	31.9	3.2
베트남	15.5	13.8	8.7	△40.0	14.7	11.7	7.0	△40.2
필리핀	29.6	14.9	5.2	△65.1	15.8	6.2	2.1	△66.1
노르웨이	-	1.0	-		-	1.4	-	
인도네시아	-	-	2.0		-	-	1.5	
러시아	32.2	35.1	58.4	66.4	21.4	26.2	31.5	20.2
캐나다	-	1.6	-		-	0.7	-	
미 국	1.2	1.2	1.0	△16.7	14.7	15.2	11.1	△30.0
칠 레	99.1	97.5	82.1	△15.8	234	214	177	△17.3
브라질	71.3	63.5	128	101.6	23.2	15.5	24.6	58.7
통 가	-	15.8	-		-	1.2	-	

(11) 활 바지락

■ 관세정보

● HS코드

- 0307.91-460 (활 바지락 수입 시 적용되는 코드)

● 관세율

기본	WTO협정 (한국)	특별특혜 (LDC)	경제연계협정(EPA)		
			멕시코	아세안	필리핀
10%	7%	무관세	무관세	6.3%	2.3%

자료: 일본관세협회

■ 통관 시 주의사항

●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 품목임



■ 수입바이어 견해

- 한국산 바지락은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보다 외식업체에 유통되는 물량이 대부분임
- 이물질 혼입이 없도록 선별 작업이 중요함

■ 운송관련 정보

- 일본의 7개 항구로 수입되었으며 시모노세키 항으로 수입이 대부분임. 한국산은 시모노세키 항으로 99.9%가 수입됨
- 모두 해상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수입됨

<2010년 활 바지락 세관별 수입동향>

(단위: kg, 천 엔)

	운송형태	물량	금액	물량 점유율
<b>수입 합계</b>		<b>40,313,757</b>	<b>6,550,299</b>	
<b>한국</b>		<b>13,555,023</b>	<b>3,198,167</b>	<b>100%</b>
오사카(大阪)	해상컨테이너	600	367	0.004%
<b>시모노세키(下関)</b>	<b>해상컨테이너</b>	<b>13,554,423</b>	<b>3,197,800</b>	<b>99.99%</b>
<b>중국</b>		<b>26,755,734</b>	<b>3,351,831</b>	<b>100%</b>
시모노세키	해상컨테이너	7,922,354	1,037,099	29.6%
미이케	해상컨테이너	8,171,080	947,088	30.5%
<b>러시아</b>		<b>3,000</b>	<b>301</b>	<b>100%</b>
시모노세키	해상컨테이너	3,000	301	100%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 활 바지락 수입동향

- '10년 활 바지락의 전체 수입물량은 40,314톤이며 수입액은 65억 5천만 엔임
- 수입국은 중국, 한국, 러시아 3개국 뿐이며 중국이 전체 수입량의 66.4%를 차지하여 1위이며 한국이 2위로 전체물량의 33.6%인 13,555톤 수입액은 31억 9천 8백만 엔으로 나타남

<활 바지락 수입동향>

(단위: 톤, 백만 엔)

	물량				금액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
전 체	26,247	30,949	40,314	30.3	4,120	5,306	6,550	23.4
한 국	7,415	12,686	13,555	6.9	1,736	2,934	3,198	9.0
중 국	18,832	18,263	26,755	46.5	2,404	2,372	3,352	41.3
미 국	-	0.3	-		-	0.3	-	
러시아	-	-	3		-	-	0.3	

### 3. 각 품목 공통사항 수입정보

#### ■ 통관제도 및 주의사항

##### ● 수입통관

-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본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수입식품감시담당에게 「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음. 검역소에서 심사·검사 후, 동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완료」 인장이 날인되어 반환됨

##### - 관계 서류

- ① 인보이스 ② 패킹리스트 ③ 보험명세서 ④ B/L ⑤ A/N
- ⑥ 원산지증명서 ⑦ 성분표/공정도/시험성적서 ⑧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 - 통관제도 변동사항

-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안전과에서는 2009년 12월 31자로 기존의 선행 샘플 통관제도를 폐지하고 2010년 1월 1일 부터 본선 통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본선 통관 제도는 본선 컨테이너에 적재한 화물에서만 직접 검체, 채취하도록 운영 방침을 변경하여 후생성의 허가를 받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 한 후 식품 위생법 위반 시 수입품 폐기 및 반송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시험성적서는 전과 동일하게 1년간 유효하며 본선 통관 시에 시험성적서 제시하면 즉시 통관이 가능한 제도 임

● 첨가물 등의 규제

-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생산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생물질이나 항균성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의 규격기준에 합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일본에서는 항생물질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만이 0.10ppm 까지의 잔류가 인정됨
- 또한 심사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관이 입회하여 현장검사가 실시됨. 검사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합격 날인하고 불합격일 경우에는 화물의 파기 또는 반송조치를 취함

● JAS법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동 법에 의거, 판매 시에는 「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 및 「수산물 품질표시기준」에 따라서 일괄표시를 행할 필요가 있음. 이 중에서 수입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됨
- 품질표시
  - 선어에 대해서는 품명, 원산국 표시가, 또한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품명, 원재료, 내용량, 제조업자, 유통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 수산물 품질표시 방법

- 수산물 용어정의
  - 어류 : 담수산어류, 연어·송어류, 청어·정어리류, 가다랭이·참치·고등어류, 전갱이·방어류, 대구류, 광어·넙치류, 농어·돔, 기타어류
  - 패류 : 채첩, 굴류, 피조개, 대합·바지락조개류, 전복류, 소라류, 기타조개류
  - 수산동물류 : 오징어류, 문어류, 새우류, 대하·기와새우·가재류, 게류, 기타 갑각류, 성게·해삼류, 거북어류, 기타 수산동물류
  - 해산 포유동물류 : 고래, 돌고래, 기타 해산 포유동물류
  - 해조류 : 다시마류, 미역류, 김류, 한천원초류, 기타 해조류
- 필요 표시사항 : 명칭과 원산지 2가지
  - 명 칭 : 그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
  - 원산지
    - (a) 국산품에 있어서는 생산한 수역의 명칭 (이하 「수역명」이라함.) 또

는 지역명 (주된 양식장이 속하는 도도부현명을 말함.을 기재. 다만 수역  
명의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륙한 항명 또는 양륙한 항구가  
속하는 도도부현명으로 수역명의 기재에 대신할 수 있음. 수입품에 있  
어서는 원산국명을 기재

(b) (a)의 규정에 관계없이 국산품에 있어서는 수역명에 양륙한 항명 또는  
양륙한 항구가 속하는 도도부현명을, 수입품에 있어서는 원산국명에  
수역명을 병기 할 수 있음

• 해동, 양식된 것을 판매할 경우의 표시

(a) 해동 (해동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표시의무가 있음.) 냉동한 것을 해동  
해 판매하는 경우는 「해동」이라고 기재

(b) 양식 (양식된 것을 판매하는 경우는 표시의무가 있음.) 양식된 것을  
판매하는 경우는 「양식」이라고 기재

• 용기에 넣거나 또는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특정상품의 판매와 관련되는 계량에 관한 정령(1993년 정령 제249호) 제5조  
에 규정하는 특정상품이며 용기에 넣거나 또는 포장된 것에 대해서는 판  
매업자가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전항 각 호에 열거한  
것 외에 내용량, 판매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로 함

- 표시하는 곳

• 소매업자는 용기 혹은 포장의 보기 쉬운 개소, 또는 상품에 근접한 게시, 기  
타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

• 유통업자는(도매업자, 중간도매업자, 수입업자 등) 용기 혹은 포장의 보기  
쉬운 개소, 운송장, 납품서등에 표시를 하고 다음의 유통단계 편에 확실한  
정보를 전달

• 용기 또는 포장에 인쇄하는 표시에 이용하는 문자는 일본공업규격 Z8305  
(1962)에 규정하는 8포인트 활자이상의 크기가 통일된 활자를 사용

• 다음의 경우는 가공식품에 해당

(a) 가열처리 등을 하였을 경우 : 껍질 벗긴 바지락조개(가열), 삶은새우, 찐  
문어, 장어구이

(b) 염장 등을 하였을 경우 : 연어 알, 명란젓, 염장미역(소금 뺀 것 포함)등

(c) 수분조정 등의 목적으로 일조건조를 하였을 : 건어물

(d) 식초 등으로 가공한 경우 : 식초에 절인 고등어(식초 등에 담긴 신선어패류)

- 표시의무자

-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까지의 유통과정의 모든 사람
- 해외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도 표시 의무가 있음. 단지, 생산자가 양륙한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또는 설비를 마련해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표시의무는 없음

● 원료원산지명 표시방법

- 주된 원재료가 국산의 경우는 국산인 취지를, 수입품의 경우는 원산국을 기재. 단지 국산의 경우는 국산에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할 수 있음
- 수산물에 있어서는 생산 (채취 및 채포를 포함.) 한 수역명, 양륙한 항명, 양륙한 항구 또는 주된 양식장이 속하는 도도부현명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 또한 수입된 수산물의 경우는, 원산국명에 수역명을 병기할 수 있음
- 기본적 표시방법

예 1 원재료명 란에 괄호 쓰기로 표기

명 칭	전갱이 열림
원재료명	진 전갱이 (A국가), 식염
내 용 량	1마리
소비기한	평성××연××월××일
보존방법	10℃이하로 보존해 주세요.
제 조 자	××주식회사××현××시××정×-×

예 2 원료원산지명 란에 의한 표기

명 칭	전갱이 열림
원 재료 명	진 전갱이, 식염
원료원산지명	A국가
내 용 량	1마리
소비기한	평성××연××월××일
보 존 방 법	10℃이하로 보존해 주세요.
제 조 자	××주식회사××현××시××정×-×

- 일괄표시 범위밖에 인자 등으로 기재할 수 있음(범위 내 표시가 곤란한 경우)

**예** 표기개소를 명시한 다음 범위 밖에 사전에 인쇄

명칭	건조○○	<div style="text-align: center;"> <p>건조○○</p> <p>원료○○의 산지; A국가</p> </div>
원재료명	○○, ××, ---	
원료원산지명	상품명하부에 기재	
내용량	100그램	
소비기한	평성××연××월××일	
보존방법	일사광선을 피해 상온에 보존해 주세요.	
제조사	××주식회사××현××시××정×-×	

- 주된 원재료의 원산지가 2개소 이상 혼합하고 있는 경우는 중량이 많은 순서로 기재. 3개소 이상 있는 경우는 3개소째 이하를 「그 외」라고 기재할 수도 있음

**예 1** 원료원산지가 3개소 이상 있고 모두 기재하는 경우

명칭	염장 명란
원재료명	○○(A국, B국, C국, D국), ××, △△
내용량	100 g
소비기한	헤세이××연××월××일
보존방법	직사광선을 피해 상온에 보존해 주세요.
제조사	××주식회사××현××시××마을×-×

**예 2** 원료원산지를 2개소이상 기재하고 그 이상을 「기타」로서 기재할 경우

명칭	건조○○
원재료명	○○(A국, B국, 기타), ××, △△
내용량	100g
소비기한	헤세이××연××월××일
보존방법	직사광선을 피해 상온에 보존해 주세요.
제조사	××주식회사××현××시××정×-×

- 복수국의 원료를 혼합해 제조하는 등, 원산지의 중량비율이 상품마다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도 있음. 다만, 소비자에 대해서 우량오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

예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중량순으로 표시하고 그 방법 및 상세한 것에 대하여 회답할 수 있는 취지를 표시

명 칭	염장 명란
원재료명	명태의 난소(미국 또는 러시아),××,△△
내 용 량	100g
소비기한	헤세이××연××월××일
보존방법	10℃이하로 보존해 주세요.
제 조 자	××주식회사××현××시××정×-×

※ 명태의 난소 원산지는, 당사에 있어서 00년 취급실적이 많은 순서로 표시하고 있음. 자세한 것은 폐사 고객창구 (전화번호00)에 질문해 주세요

- 표시하는 곳

- 표시는 다음의 양식(가격표에 의한 표시와 다음의 양식에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해, 다음의 양식과 동등정도 알기 쉬운 일괄표시)에 의해,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개소에 표시. 다만, 용기를 포장지로 외장하는 경우는, 외장지에 필요한 표시를 하든가 또는 용기의 표시가 외장지를 투과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든가 외장지에 감추어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음
- 일괄하여 표시

명 칭	○○○○○○
원 재료 명	○○○○,○○○,○○○○,○○○
원료원산지명	○○○○○
내 용 량	○○○g
고 형 량	○○○g
내 용 총 량	○○○g
상 미 기 한	평성○○년○○월○일
보 존 방 법	○○○○○○○○
원 산 국 명	○○○○○
제 조 자	○○○○○○○○○○○○

- (a) 「명칭」에 대신해 「품명」, 「종류별」 또는 「종류별명칭」이라고 할 수 있음
- (b) 표시에 이용하는 문자 및 테두리 색은, 배경의 색과 대조적인 색으로 함
- (c) 표시에 이용하는 문자는 일본공업규격 Z8305(1962)에 규정하는 8포인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하는 것. 다만, 표시가능 면적이 대개 150cm<sup>2</sup> 이하의

것은, 5.5포인트 이상의 크기의 활자로 할 수 있음

- (d) 명칭, 내용량을 상품의 주요면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는 이 양식 중에서 명칭 및 내용량의 항목을 생략 할 수 있음
- (e) 이 양식에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양식 중에 기재한 곳을 표시하면, 다른 곳에 기재할 수 있음  
; 원재료명, 원료원산지명 (원재료명 란의 원재료의 다음에 괄호를 교부해 기재하는 경우는 항목을 생략 할 수 있음), 내용량, 상미기한 (이 경우, 보존방법에 대해서도 기재한 곳을 표시해, 상미기한에 근접한 장소에 기재할 수 있음)
- (f) 표시를 하는 가공식품이 액체 등의 경우로 고형량 등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는 양식의 항목을 생략
- (g) 품질이 급속히 변화하기 쉬워 제조 후 신속하게 소비해야할 것은 상미기한을 소비기한이라고 기재
- (h) 제조자등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지도 등에 따라, 표시되고 있는 내용에 책임을 가지는 자를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등 적절한사항명을 붙여 기재
- (i) 원산국명은 수입품의 경우에 이것을 제조한 국가명을 기입
- (j) 이 양식은 세로쓰기로 할 수 있음
- (k) 이 양식 테두리 안에서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테두리를 생략할 수 있음

※ 상기(a)부터(k)에 상관없이 「용기포장의 면적이 30cm<sup>2</sup> 이하」, 「원재료가 1종류」, 「내용량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 「품질변화가 지극히 적은 것」, 「상온에서 보존하는 것 이외로 보존방법으로 유의점이 없는 것」의 경우, 표시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명칭	삶은 문어
원재료명	문어 (국산)
내용량	180그램
소비기한	평성××연××월××일
보존방법	5℃이하로 보존해 주세요.
수입자	××주식회사××현××시××정××

● 라벨링 규정 위반시

- 품질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JAS법 제19조의 14의 규정에 근거해 농림수산대신,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판매자등에 대해서 표시사항을 표시하고 또는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할 취지를 지시(원칙으로서 지시했을 경우에 공표)하도록 됨
-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농림수산대신이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을 명령하게 됨. 그 명령에 위반했을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법인에 대해서는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산물 유통단계별 경비 (자료: 농림수산성)

- 산지단계의 유통경비
  - 산지 도매가격에 차지하는 생산자수취가격(산지도매가액에서 산지도매수입을 공제한 금액)의 비율은 96.0%, 산지도매업자의 산지도매수입(산지도매업자가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매 수수료 및 그 외의 공제 경비)의 비율은 4.0%로 나타남
  - 산지출하업자의 판매수입에 차지하는 구입금액(구입원가)의 비율은 80.4%, 산지출하경비의 비율은 19.4%로 나타남
- 소비자단계의 유통경비
  - 구매 브로커 업자의 판매수입에 차지하는 구입금액(구입원가)의 비율은 87.8%, 구매 브로커 경비의 비율은 13.8%로 나타남
  - 소매업자의 판매수입에 차지하는 구입금액(구입원가)의 비율은 65.8%, 소매경비의 비율은 29.8%로 나타남

<산지도매업자의 유통경비>

(단위: 천 엔, %)

구분	산지도매수입 (도매수수료등) ①	산지도매경비					이윤③ =①-②
		계 ②	판매관리비			기타경비	
			소계	인건비	기타판매 관리비		
1업자당 평균	399,634	397,702	324,356	201,032	123,324	73,346	1,932
산지도매수입①에대한 비율	100.0	99.5	81.2	50.3	30.9	18.4	0.5
산지도매경비②에대한 비율	-	100.0	81.6	50.5	31.0	18.4	-

<산지출하업자의 유통경비>

(단위: 천 엔, %)

구분	판매수입 ①	구입금액 (구입원가) ②	산지출하경비					이윤④ =①- ②-③
			계③	판매 경비	관리 경비	금료 수당	기타 경비	
1업자당 평균	1,982,148	1,593,385	384,075	187,552	88,765	93,286	14,472	4,688
판매금액①에대한 비율	100.0	80.4	19.4	9.5	4.5	4.7	0.7	0.2
산지출하경비계③에대한비율	-	-	100.0	48.8	23.1	24.3	3.8	-

<중도매업자의 유통경비>

(단위: 천 엔, %)

구분	판매수입 ①	구입금액 (구입원가) ②	산지출하경비					이윤④= ①-②-③
			계③	판매 경비	관리 경비	금료 수당	기타 경비	
1업자당 평균	902,783	792,320	124,801	17,851	35,743	67,549	3,658	-14,338
판매금액①에대한 비율	100.0	87.8	13.8	2.0	4.0	7.5	0.4	-1.6
산지출하경비계③에대한비율	-	-	100.0	14.3	28.6	54.1	2.9	-

<소매업자의 유통경비>

(단위: 천 엔, %)

구분	판매수입 ①	구입금액 (구입원가) ②	산지출하경비					이윤④= ①-②-③
			계③	판매 경비	관리 경비	금료 수당	기타 경비	
1업자당 평균	61,979	40,774	18,484	1,738	6,905	9,411	430	2,721
판매금액①에대한 비율	100.0	65.8	29.8	2.8	11.1	15.2	0.7	4.4
산지출하경비계③에대한비율	-	-	100.0	9.4	37.4	50.9	2.3	-

■ 운송관련정보

- 감푸훼리(시모노세키~부산 간 수출입운항), 팬스타(오사카항~부산항) 정보
  - 일본과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 주요 항로로서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시모노세키항이 이용되고 있음
  - 감푸훼리는 시모노세키항~부산항간을 매일 운항. 1970년에 일본 처음으로 국제정기 훼리항로로 개설되었으며 1998년에는 ‘하마유(はまゆう)호’, 2002년에는 ‘성희(星希)호’가 취항함. 연중무휴로 통관이 이루어져 한국에서 관동방면, 관서방면까지 2~3일에 수송이 가능하여 신속한 수송 루트로 이용되고 있음

- 이전에는 한국산의 대부분이 시모노세키항 등으로만 수입되던 것이, 최근 오사카항 페리호(팬스타호)의 월, 수, 금 운항으로 인해 오사카항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음

<부산항⇔오사카항 / Panster Dream>



- 운항 웨리정보

	하마유(はまゆう)호	성희(星希)호
선명		
국적	일본	한국
취항일	1998년 8월 28일	2002년 5월 22일
국제톤수	16,187톤	16,875톤
일본국내 톤수	7,747톤	8,076톤
전장	162m	162m
폭	23.60m	23.60m
흘수	5.60m	5.60m
항해속도	18.00knot	18.00knot
최대속도	20.49knot	20.49knot
주기(主機)	디젤 6000× 2기	디젤 6000× 2기
프로펠러	가변피치	가변피치
스테빌라이저	1쌍	1쌍
최대 탑승인원	여객:460명 선원:40명 (합계:500명)	여객:562명 선원:43명 (합계:605명)
적재능력	140 TEU	140 TEU
상용차	30대	1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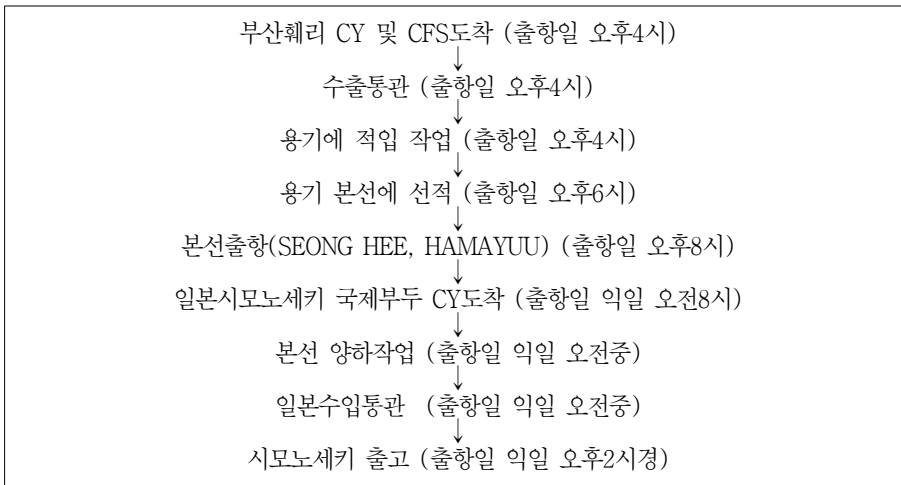
- 운송주기
  - 부산(20:00) → 시모노세키(08:00) : 부관훼리 / 매일 운항
  - 부산(15:10) → 오사카(10:00) : 팬스타(PAN STAR) / 주 3회, 화, 목, 일
- 수출 운항 항로
  - 부산←(항해시간 13시간)시모노세키←(수송시간20시간)도쿄
- 수입 운항 항로
  - 부산(항해시간12시간)→시모노세키(수송시간20시간)→도쿄

● 컨테이너화물 수출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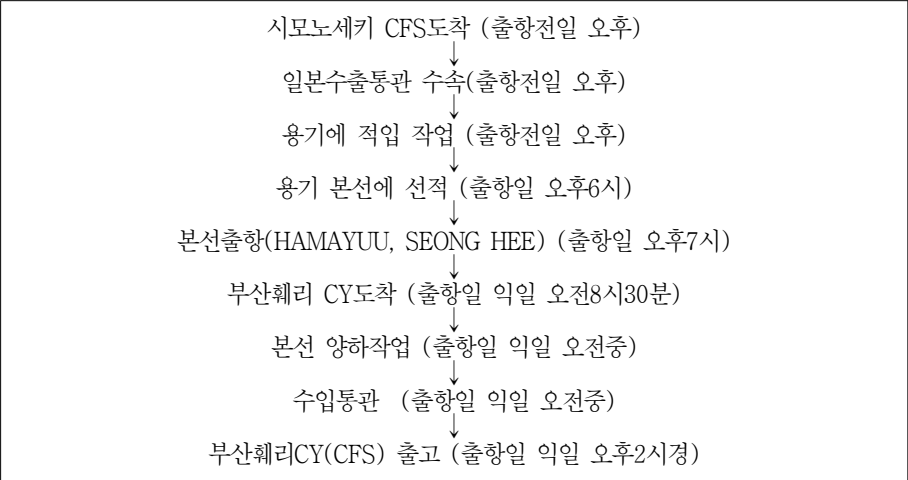
- ① 송화인의 선적예약 및 S/R(shipping request, 선적의뢰서)송부
  - 송화인은 유선상(전화/팩스)으로 선사에 선적예약(Booking)
    - CONTAINER DOOR시 일시, 크기, 장소 등의 세부사항을 통지
    - LCL(소량컨테이너화물)의 경우 S/R 접수로 선적예약
  - S/R 및 선적서류 송부
    - S/R 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신고필증 (CY 화물입고 전까지)
- ② 선사에서 내륙운송사에 화물 운송지시
- ③ 운송사는 CY에서 Empty Container Pick Up 및 Seal 수령 후 Door 작업
- ④ 송화인은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관세사에 전달, 관세사는 세관에 수출신고서 제출
- ⑤ 송화인은 수출신고필증 수령 후 선사에 즉시 팩스 송신
  - ※ 보세구역 장치, 세관검사 후 수리되는 경우도 있음
- ⑥ 선사는 송화인으로 부터 접수한 S/R을 가지고 B/L(bill of landing, 선하증권)작성
- ⑦ CY 및 CFS에 화물입고
  - Door container의 적입작업 후 CY 반입
  - LCL 화물의 CY 도착 및 선적용기에 적입
    - LCL화물의 경우 화주의 S/R 접수에 의한 선사의 B/L 입력완료시 검수회사(CFS)의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선적예약(Booking)등록
    - 검수회사 (CFS)에서는 선사의 선적예약 확인 후 작업지시로 화물 하차 및 선적용기 적입

- ⑧ 검수회사 : 입고현황을 선사에 통지
- ⑨ 송화인은 B/L 체크 및 비용 정산
  - 선사에서 체크 B/L 및 선임 송장(Invoice)을 송화인에게 팩스송신
  - 송화인은 B/L 체크 및 선임/부대비용 정산
  - B/L발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 O B/L (ORIGINAL B/L, 선하증권원본)선장탁송 또는 SURRENDER
- ⑩ 하역회사는 본선 선적
- ⑪ 선사는 선박 출항 후 익일 (공휴일제외)까지 세관에 적하목록(Manifest)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로 신고

● 부산 발(한국수출) 수출화물 운송표준시간



● 시모노세키발(한국수입) 수출화물 운송표준시간



● 선적용기 일람 규격표

컨테이너종류	본수	외부 사이즈(mm)			내부 사이즈(mm)			용적 (m <sup>3</sup> )	최대 적재량 (kg)	차량 중량 (kg)
		L	W	H	L	W	H			
12' 일반	50본	3,658	2,438	2,591	3,588	2,309	2,366	19,60	5,000	1,590
20' 일반	462본	6,058	2,438	2,591	5,900	2,352	2,390	33,20	28,230	2,250
40' 일반	100본	12,192	2,438	2,591	12,032	2,352	2,390	67,60	26,780	3,700
40' 일반 (9'6)	169본	12,192	2,438	2,896	12,032	2,352	2,695	76,30	26,560	3,920
12' 냉동	15본	3,715	2,475	2,500	3,101	2,283	2,142	15,16	4,300	2,500
20' 냉동	84본	6,058	2,438	2,591	5,483	2,286	2,243	28,10	21,270	2,730
40' 냉동	19본	12,192	2,438	2,591	11,556	2,286	2,216	58,50	26,710	3,770
40' 냉동 (9'6)	28본	12,192	2,438	2,896	11,580	2,290	2,542	67,40	29,300	4,700
20' 보냉	10본	6,058	2,438	2,591	5,800	2,262	2,236	29,30	21,600	2,400
20' 사이드오픈	4본	6,058	2,438	2,591	5,900	2,288	2,222	29,99	20,900	3,100
20' 사이드오픈(9'6)	15본	6,058	2,438	2,896	5,956	2,288	2,527	34,50	20,600	3,400

● 컨테이너운송비 (한국측)

(단위: 원)

용기구분		T.H.C	WAFAGE (수출/수입)	
FCL	40피트	DRY	137,000	8,400/8,400
		REF	247,000	8,400/8,400
	20피트	DRY	<b>101,000</b>	<b>4,200/4,200</b>
		보냉	<b>101,000</b>	<b>4,200/4,200</b>
		REF	<b>177,000</b>	<b>4,200/4,200</b>
	12피트	DRY	55,000	2,100/2,100
		REF	100,000	2,100/2,100
	6피트	DRY	25,000	2,100/2,100
보냉		25,000	1,470/2,100	
LCL	DRY	6,000	192/350	
	보냉	6,000	147/350	

● 컨테이너운송비 (일본측)

(단위: 엔)

용기구분		C.H.C	
FCL	40피트	DRY	42,200엔
		REF	54,800엔
	20피트	DRY	<b>24,200엔</b>
		보냉	<b>24,200엔</b>
		REF	<b>37,200엔</b>
	12피트	DRY	12,000엔
		REF	15,000엔
	6피트	DRY	6,000엔
보냉		6,000엔	
LCL	DRY보냉	1,800엔	



붙임 1 | 일본의 수산물 수입현황 (2010년 금액 상위 20개국)

(단위: 백만 엔, %)

순위	국가명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비
		수입액	구성비	수입액	구성비	수입액	구성비	
1	중국	263,296	16.8	221,401	17.1	242,119	17.7	9.4
2	태국	115,845	7.4	103,522	8.0	112,730	8.2	8.9
3	미국	158,424	10.1	115,581	8.9	111,166	8.1	△3.8
4	칠레	108,730	6.9	110,230	8.5	109,800	8.0	△0.4
5	러시아	132,404	8.4	96,106	7.4	103,194	7.5	7.4
6	<b>대한민국</b>	<b>76,301</b>	<b>4.9</b>	<b>72,965</b>	<b>5.6</b>	<b>78,652</b>	<b>5.7</b>	<b>7.8</b>
7	인도네시아	84,929	5.4	73,884	5.7	74,804	5.5	1.2
8	베트남	79,460	5.1	66,925	5.2	71,678	5.2	7.1
9	노르웨이	58,599	3.7	58,483	4.5	66,662	4.9	14.0
10	대만	59,149	3.8	44,779	3.5	60,114	4.4	34.2
11	캐나다	47,546	3.0	35,625	2.7	40,877	3.0	14.7
12	호주	47,713	3.0	34,206	2.6	34,105	2.5	△0.3
13	인도	33,379	2.1	24,718	1.9	33,465	2.4	35.4
14	페루	19,321	1.2	14,120	1.1	20,559	1.5	45.6
15	홍콩	13,304	0.8	4,773	0.4	17,406	1.3	264.7
16	필리핀	22,249	1.4	14,616	1.1	16,708	1.2	14.3
17	모로코	16,301	1.0	12,300	0.9	11,738	0.9	△4.6
18	아이슬란드	13,200	0.8	10,186	0.8	11,279	0.8	10.7
19	뉴질랜드	12,087	0.8	11,547	0.9	11,209	0.8	△2.9
20	모리타니아	11,512	0.7	13,270	1.0	10,215	0.7	△23.0
참고	EU27개국	70,133	4.5	47,948	3.7	35,896	2.6	△25.1
<b>상위20개국 계</b>		<b>1,373,749</b>	<b>87.5</b>	<b>1,139,236</b>	<b>87.9</b>	<b>1,238,481</b>	<b>90.3</b>	<b>8.7</b>
<b>수산물 계</b>		<b>1,569,595</b>	<b>100.0</b>	<b>1,296,670</b>	<b>100.0</b>	<b>1,370,892</b>	<b>100.0</b>	<b>5.7</b>

## O B/L 선장탁송 요청서

수신: 부관훼리(주) 대표이사

참조: 수출화물과장

발신:

담당자: (TEL: )

1. B/L NO. :
2. SHIPPER :
3. CONSIGNEE :
4. NOTIFY PARTY :
5. VESSEL NAME :
6. VOYAGE NO. :
7. POL/POD :

상기의 건과 관련하여 ORIGINAL B/L의 선장탁송을 요청하오니 도착항에서 CONSIGNEE가 ORIGINAL B/L의 제시 없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 드립니다.

DATE : 20 . . . .

요청회사 상호  
대표이사 성명  
(명판, 직인)

## SURRENDER 요청서

수신: 부관훼리(주) 대표이사

참조: 수출화물과장

발신:

담당자: (TEL: )

1. B/L NO. :
2. SHIPPER :
3. CONSIGNEE :
4. NOTIFY PARTY :
5. VESSEL NAME :
6. VOYAGE NO. :
7. POL/POD :

상기의 건과 관련하여 ORIGINAL B/L의 SURRENDER를 요청하오니 도착 항에서 CONSIGNEE가 ORIGINAL B/L의 제시 없이 화물을 인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 드립니다.

DATE : 20 . . .

요청회사 상호  
대표이사 성명  
(명판, 직인)

## LETTER OF INDEMNITY

TO : PU-KWAN FERRY CO.,LTD.

DATE : 200 . . . .

M/S : \_\_\_\_\_ VOY. NO. \_\_\_\_\_ SAILED : \_\_\_\_\_

DEAR SIRs.

IN CONSIDERATION OF YOUR HANDING US CLEAN BILL OF LANDING FOR OUR SHIPEMENT BY THE FOLLOWING VESSEL AS DESCRIBED BELOW. THE MATE'S RECEIPT OF WHICH BEARS THE FOLLOWING CLAUSES ;

WE HEREBY UNDERTAKE AND AGREE TO PAY ON DEMAND ANY CLAIM THAT MAY THUS ARISE ON THE SAID SHIPMENT AND OR THE COST OF ANY CONSEQUENT RECONDITIONING AND GENERALLY TO INDEMNIFY YOURSELVES AND OR AGENTS AND OR THE OWNERS OR THE SAID VESSEL AGAINST ALL CONSEQUENCES THAT MAY ARISE FROM YOUR ACTION.

FURTHER, SHOULD ANY CLAIM ARISE IN RESPECT OF THIS GOODS. WE HEREBY AUTHORIZE YOU AND OR AGENTS AND OR OWNERS OF THE VESSEL TO DISCLOSE THIS LETTER OF INDEMNITY TO THE UNDERWRITERS CONCERNED,

B/L NO.	MARKS & NO.	NO. OF P'KGS	DESCRIPTION	DESTINATION

YOUR FAITHFULLY

파손 화물 보상장  
(LETTER OF GUARANTEE)

TO : 부관훼리주식회사

VSL/VOY :

B/L. NO. :

SHIPPER :

COMMODITY :

QUANTITY :

상기 화물을 귀사 선박에 선적시키기 위하여, 당사 공장에서 귀사 CY까지  
내륙운송도중 수침/파손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당사가 책임을 지겠사오니 선처바랍니다.

년    월            일

(인)

## LETTER OF GUARANTEE

TO : PU-KWAN FERRY CO.,LTD. DATE : 200 . . .  
VESSEL :  
VOY :  
B/L. NO. :  
DESCRIPTION :

WITH REFERENCE TO THE ABOVEMENTIONED BILL OF LADING  
SHIPPING DATE, WE WOULD REQUEST YOU TO KINDLY AMEND AS  
FOLLOWS:

ORIGINALLY MADE OUT                      TO BE AMENDED TO RED

IN CONSIDERATION OF YOUR COMPLYING WITH OUR REQUEST  
WE HEREBY GUARANTEE THAT WE HOLD OURSELVES RESPONSIBLE  
FOR AND INDFMNIIEY YOU AGAINST ALL CONSEQUENOES THAT  
MAY ARISE THERE FORM:

---

MANAGER

# 자가운송 요청 및 각서

## 부관훼리(주) 귀중

폐사의 수출(입)화물을 당사가 지정한 운송회사를 통하여 국내운송(자가)을 요청하오며 자가운송 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자선허용 기간:
2. 귀사의 CY에서 컨테이너를 반출(이하 반출이라 함)하고 상기 기간 내 반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및 제반 책임은 당사의 부담임.
3. 폐사가 지정한 운송회사를 통하여 EIR양수도에 서명하고 컨테이너의 반출 후 운송도중 발생한 컨테이너 손상(DAMAGE)기타 모든 제반사고(책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가 지겠음  
단, EIR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는 국내시장 사정을 감안하여 터미널 반출 전에 손상 컨테이너로 체크되지 않았으나, 당사의 화물 적입 후 손상상태로 컨테이너가 반환 될 시 EIR과 관계없이 전액을 이의 없이 지불하겠음  
손해배상의 근거는 CONTAINER REPAIR SHOP에서 작성한 E.O.R(ESTIMATE OF REPAIR) 에 의함.
4. 내장화물의 적입컨테이너를 귀사의 CY까지 반입완료 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화물의 양부족(SHORTAGE), 손상 등의 사고는 당사의 책임임
5. 컨테이너의 반출 당일 전반적인 MOVEMENT STATUS(작업 및 CY도착 예정 시간)는 운송사를 통하여 유선 상으로 통보하겠음
6. 귀사의 컨테이너를 인도 받은 후 ( )일 내에 컨테이너를 귀사가 지정한 DEPOT/CY에 반납토록 하겠으나 당사의 사정에 의해 귀사의 반환요청 시한을 넘긴 장기체류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귀사의 RULE & TARIFF에 의거 해당비용을 지불하겠음
7. 상기에 명시된 당사 부담 발생에 대해 귀사 청구 일로부터 30일내 지불하겠음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에서 귀사 임의대로 자선배정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B/L NO.		B/L NO.	
컨테이너 NO.		컨테이너 NO.	
화주		화주	
운송사		운송사	
전화번호		전화번호	

(직인, 명판)

(직인, 명판)

## 각 서

1. 선명 :
2. 입항일 :
3. B/L NO. :
4. 품명
5. 수량
6. 화주

1. 상기의 당사수입화물을 부산세관 관할 보세구역에서 \_\_\_\_\_ 세관 관할지역 폐사 자가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공장 및 타 소장장치장으로 보세 운송하거나 부산세관 관할 보세구역에서 통관함에 있어, 본 화물에 관한 B/L 원본 또는 은행발행 L/G를 귀사에 제출한 후 보세 운송 하여야 하나, 현재 선적서류 도착지연으로 B/L 원본의 인수는 물론 은행 L/G조차 받을 수 없어 부득이 각서를 차입코 보세 운송 또는 통관한 후, 본 화물을 통관완료하기 전까지는 필히 B/L 원본 또는 은행 L/G를 귀사에 제출, 귀사의 D/O를 발급받아 통관 사용하겠기에 보운 동의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화물 보세운송 또는 통관 후 상기 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사에 대한 재산적 피해, 기타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도 그 모든 법적 책임을 폐사에서 부담하겠음을 확약코 이 각서를 차입 합니다.

## 보세운송요청도의통지서

1. 선명:
2. 입항일:
3. B/L NO.:
4. 품명:
5. 수량:
6. 화주

상기 물품을 \_\_\_\_\_ 세관관할 \_\_\_\_\_ 보세구역  
(장치장)으로 보세운송함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의

요청인

(화주)

\_\_\_\_\_ 귀하 (선박회사)

상기 동의하고 아래 인에게 통지함

년 월 일

선박회사 인

\_\_\_\_\_ 귀하 (설영인)

또는 창고

화물예약요청서

(DOOR ORDER SHEET)

(*) 필히 표기부탁 드립니다.	(*) 필히 표기부탁 드립니다.	BOOKING NO.(*) 필히 표기부탁 드립니다.		
PORT(*)	<input type="checkbox"/> OSAKA	<input type="checkbox"/> TOKYO	<input type="checkbox"/> TSURUGA	
선적일(*)		E-MAIL(*)		
예약자 상호(*)		담당자(*)	TEL(*)	
실화주명(*)		담당자	TEL	
TYPE(*)	<input type="checkbox"/> FCL	<input type="checkbox"/> LCL	<input type="checkbox"/> BULK	
(*) LCL & BULK (내품중량/갯수)	* LCL & BULK건은 필히 현물에 MARK부착해주세요.			
(*) DOOR	상차지	<input type="checkbox"/> 경인	<input type="checkbox"/> 부산	
	운송주체	<input type="checkbox"/> 라인운송 <input type="checkbox"/> 자가운송 (업체명표기)		
	작업지			
	작업요청일 및 시간	자가운송 은 픽업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TEL	
(*)CNTR TYPE (20' 40' HC R/F)		온도		
비 고				
상기 화물의 작업을 요청합니다.  화물전용 TEL: 02)756-4500 화물전용 FAX: 02)756-4550  예약자 _____ 담당자 _____ (인)				

PANSTAR LINE DOT COM.

\_\_\_\_\_ 귀하(            또는 창고 설영인)







번호	통계 세분	품명	관세율				경제연계협정세율										단위		
			기 본	장 정	W T O 협 정	특 혜	특 혜	신 가 품	맥 시 코	말 레이 시아	칠 레	태 국	인 도 네 시 아	브 루 나 이	아 세 안	필 리 핀	스 위 스	베 트 남	인 도
		다랑어(Thunnus속(屬)) 및 가디랑어 (Eufynnus(katsuwonus) pelamis) (간장, 알 및 생선의 정소를 제외함)																	
0302.31	000	날개다랑어(Thunnus alalunga)	5%		3.5%	무세									3.5%				KG
0302.32	000	황다랑어(Thunnus albacares)	5%		3.5%	무세									3.5%	1.2%			KG
0302.33	000	가디랑어	5%		3.5%	무세									3.5%	1.2%			KG
0302.34	000	눈다랑어(Thunnus obesus)	5%		3.5%	무세									3.5%				KG
0302.35	000	참다랑어(Thunnus thynnus)	5%		3.5%	무세									3.5%				KG
0302.36	000	남방참다랑어(Thunnus maccoyii)	5%		3.5%	무세									3.5%				KG
0302.39	000	기타	5%		3.5%	무세									3.5%	무세			KG
0302.40	000	청어(Clupea harengus 및 Clupea pallasii), 간장, 알 및 생선의 정소를 제외함)	10%																KG
0302.50	000	머레이대구(Gadus mornua, Gadus agac 및 Gadus macrocephalus), 간장, 알 및 생선의 정소를 제외함)	10%																KG
		기타 생선(간장, 알 및 생선의 정소를 제외함)																	
0302.61		정어리(Sardina pilchardus 및 Sardinops속 (屬) 또는 sardinella속(屬))																	
	010	1 Sardinops속(屬)	10%							8.0%									KG
	090	2 기타	5%		3.5%	무세	0.6%	무세	무세	무세	0.6%	1.3%	1.2%	1.2%	2.2%	1.2%	2.5%	2.5%	KG
0302.62	000	해덕대구(Melanogrammus aeglefinus)	5%		3.5%	무세	0.6%	무세	무세	0.6%	1.3%	1.2%	1.2%	2.2%	1.2%	2.5%	2.5%	2.5%	KG
0302.63	000	은대구(Pollachius virens)	5%		3.5%	무세	0.6%	무세	무세	0.6%	1.3%	1.2%	1.2%	2.2%	1.2%	2.5%	2.5%	2.5%	KG
0302.64	000	고등어(Scomber scombrus, Scomber australasicus 및 Scober japonicus)	10%																KG
0302.65	000	상어	5%		2.5%	무세	0.6%	무세	무세	0.6%	1.3%	1.2%	1.2%	2.2%	1.2%	1.8%	무세	2.3%	KG
0302.66	000	장어(뱀장어속(屬))	5%		3.5%	무세	0.6%	무세	무세	0.6%	1.3%	1.2%	1.2%	2.2%	1.2%	2.5%	2.5%	2.5%	KG





















번호	통계 세분	품명	관세율			경제연계협정세율										단위							
			기 본	잠 정	W T O 협 정	특 혜	특 혜	트 블 트 혜	싱 가 폴	멕 시 코	말 레이 시아	칠 레	태 국	인 도 네 시아	브 루 나 이		아 세 안	필 리 핀	스 위 스	베 트 남	인 도		
		1 청어(Clupea속(屬)), 대구(Gadus(屬), Theragra(屬) 또는 Merluccius속(屬)), 방어(Seriola속(屬)), 고등어(Scomber 속(屬)), 정어리(Etumeus속(屬), sardinops속(屬) 또는 Engraulis속(屬)), 전갱이(Trachurus속(屬) 또는 Decapterus 속(屬)) 및 콩치(Cololabis속(屬))	10%																				
		- 청어(Clupea속(屬)) 및 대구(Gadus(屬), Theragra(屬) 또는 Merluccius속(屬))	6%																				
		-- 대구(으)까지 냉동시킨 것에 한함)	4.2%																				
111		--- 명태																				KG	
112		---- 기타																				KG	
119		-- 기타																				KG	
120		- 방어(Seriola속(屬)), 고등어(Scomber 속(屬)), 정어리(Etumeus속(屬), sardinops속(屬) 또는 Engraulis속(屬)), 전갱이(Trachurus속(屬) 또는 Decapterus 속(屬)) 및 콩치(Cololabis속(屬))	5%																			KG	
		2 기타																					
910		- 감정통삼치(Sphyrnidae과(科) 또는 Gempyidae과(科)), 체장메기 및 도미			2%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KG
920		- 상어			2.5%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KG
930		- 열빙어			2.8%													무세	무세	무세	무세	무세	KG
		- 기타			3.5%																		
991		-- 참다랑어																					KG
992		-- 복어																					KG
									0.6%	무세	무세	0.6%	1.3%	1.2%	1.2%	3.5%							KG
										무세	무세	0.6%	1.3%	1.2%	1.2%		2.5%	2.5%	2.5%	3.2%		KG	









번호	통계 세분	품명	관세율				경제연계협정세율										단위										
			기 본	장 정	W T O 협 정	특 혜	특 혜	신 가 품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아세안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200	2 기타	6%			4%	무세	0.8%			0.7%	0.7%	1.3%	1.7%	1.7%	1.3%	3.6%	3.6%	3.6%	KG	I	II					
0306.24		계																									
		1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및 냉장시킨 것	6%		4%		무세							4%													
	110	- 다라바가니(소라게의 한종류)									0.7%					1.3%				1.3%			3.6%	KG			
		- 바다참게																									
	121	-- 홍비디참게																						KG			
	129	-- 기타																						KG			
	130	- 꽃게										0.7%				1.3%				1.3%				KG			
	140	- 털게														1.3%				1.3%				KG			
	150	- 동남참게																		무세				KG			
	190	- 기타																		무세				KG			
	200	2 기타	15%		10%		무세					3.8%								5.0%				KG			
0306.29		기타(감각류의 기루, meal 및 pellet(식용으로서 적합한 것에 한함)를 포함																									
		1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및 냉장시킨 것																									
	110	(1)새우	4%		2%		무세	무세												무세				KG			
	190	(2)기타	10%		7%		무세	2.6%												1.8%	2.6%	2.6%	3.5%	5.1%	6.4%	KG	
		2 기타																									
	210	(1)새우	6%		5%	4%	무세	0.8%												무세	0.7%	1.5%	1.3%	1.7%	2.5%	3.6%	KG
	290	(2)기타	15%		10%		무세	3.8%												2.5%	3.8%	5.5%	5.0%	6.4%	9.1%	KG	













□ 기본 수산물 관세율표 (16류) □

번호	통계 세분	품명	관세율				경제연계합정세율							단위								
			기 본	잠 정	W T O 협 정	특 혜	특 혜	신 가 품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아세안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16.03																						
1603.00		고기, 생선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바다서식 무척추동물의 엑기스 및 주스																				
	010	1 고기 엑기스 및 주스	12.8%		12%	6%	무세								9.8%		6%				KG	
	090	2 기타	9.6%		-9.60%	6.4%	무세	3.6%	무세	1.6%	2.4%	3.2%	4.8%	4.8%	3.2%	4.0%	5.8%				KG	
16.04		생선(조제하거나 또는 저장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에 한함) 캐비어 및 생선알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																				
		생선(전형 및 단편 모양에 한하며 잘게 부순 것은 제외함)																				
1604.11		언어	9.6%		-9.60%		무세															
	010	- 기밀용기입(入) 이외의 것				7.2%		1.8%			2.7%		4.8%	4.8%	3.6%		4.5%					KG
	090	- 기타									3.6%			7.9%	4.8%		4.8%					KG
1604.12	000	정어	9.6%		-9.60%	7.2%	무세							7.9%	3.6%							KG
1604.13		장어리	9.6%		-9.60%	7.2%	무세							7.9%	2.4%		3.6%					
	010	- 기밀용기입(入)																				KG
	090	- 기타																				KG
1604.14		다랑어, 출삼치(Sardoa속) 및 가디랑어	9.6%		-9.60%		무세							7.9%								
	010	- 가디랑어(기밀용기입(入)에 한함)				6.4%					1.1%											KG
		- 기타				7.2%																
	091	-- 가디랑어도									1.2%											KG
	092	-- 다랑어(기밀용기입(入)에 한함)									1.6%				2.4%							KG
	099	-- 기타									1.6%				2.4%							KG
1604.15	000	고등어	9.6%		-9.60%	7.2%	무세							7.9%	3.6%		3.6%					KG
1604.16	000	멸치	9.6%		-9.60%	7.2%	무세	1.8%						7.9%	무세		3.6%					KG





